2021학년도 제7회 산현유치원운영위원회(정기회)

정기회 회의록

결재	위원장	유치원장

1. 일시: 2022년 2월 25일(금요일) 15시00분~
2. 장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ZOOM회의
3. 회순

   가. 개회 나. 국민의례 다. 유치원장 인사 라. 개의 선언 마. 안건심의 바. 보고사항 사. 폐회
4.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안 건		의 결
43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44	2022학년도 학사일정(안)	원안가결
45	2022학년도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46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안)	원안가결
47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세부 계획(안)	원안가결
48	2022학년도 유치원 안전계획(안)	원안가결
49	2022학년도 교권보호 계획(안)	원안가결
50	2022학년도 아동학대예방 계획(안)	원안가결
51	2022학년도 인성교육 계획(안)	원안가결
52	2022학년도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53	2022학년도 방과후과정 수익자부담금 징수 계획(안)	원안가결
54	2022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55	2021학년도 산현유치원 학교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56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교회계 본예산(안)	원안가결
57	2021학년도 산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실시 관련	원안가결
58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사 운영방안 및 대응체계 전환	원안가결
59	보결수업에 관한 규정(안)	원안가결
60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지금부터 2021학년도 제7회 산현유치원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7회 산현유치원운영위원회 정기회는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18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제7회 정기회의 회기를 2022년 2월 25일 하루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모두의 안건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고 심의하고자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44안 2022학년도 학사일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사일정을 계획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2. 근거: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3. 주요내용
 가. 2022학년도 주요 학사일정

구분	날짜	비고
입학식	2022. 3. 2. (수)	
여름방학식	2022. 7. 21. (목)	
여름방학	2022. 7. 22. (금) ~ 8. 25. (목)	
행복한 울타리 방학	2022. 8. 1(월) ~ 8. 5. (금)	
개학식	2022. 8. 26. (금)	
수료식(3,4세)	2022. 12. 28. (수)	
졸업식(5세)	2022. 12. 29. (목)	
학년말방학	2022. 12. 29. (목) ~ 2023. 2. 28. (화)	
	2022. 12. 30. (금) ~ 2023. 2. 28. (화)	
행복한 울타리 방학	2023. 2. 20. (월) ~ 2. 28. (화)	
개원기념일	2022. 5. 1.(일)	

 나. 수업일수

수업일수	1학기	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교육과정	21	21	21	20	15	0	98
		방과후과정	21	21	21	20	21	13	117
	2학기	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교육과정	4	20	19	22	20/21	0	0	85/86
		방과후과정	4	20	19	22	22	20	13	120
2022학년도 총계		수업일수	만3,4세 183일/만5세 184일							

* 본 학사일정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지침 및 유치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44안 2022학년도 학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45안 2022학년도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가. 만 3-5세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실현하고자 학비 지원
   나.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의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2. 근거
   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1285(2022.1.28.), 1287(2022.1.28.)
   나.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1424(2022.2.7.)
3. 주요내용
   가.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내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1인당 지원액(원/월)
유아학비	만5세	2016.1.1.~2016.12.31.	100,000
	만4세	2017.1.1.~2017.12.31.	
	만3세	2018.1.1.~2018.12.31.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2016.1.1.~2018.12.31.	50,000

   나.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지원금 운영 계획

구분	운영 계획	1인당 지원액(원/월)
유아학비	학습준비물 및 재료비 체험활동비	94,000
	무상급식비	6,000
방과후 과정비	교재교구비 방과후과정 학습준비물 방과후 운영비	50,000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45안 2022학년도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46안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로 안전한 체험학습의 운영을 위함.

2. 근거

가. 유아교육법 제13조(법률 제17311호)

나.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4806호)

3. 주요 내용

가.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별첨자료 첨부)

나. 현장 학습 실시에 따른 참가 규모

-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 형태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4.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무학사 업무 메뉴얼

산현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안)

1. 운영근거: 유아교육법 제13조(법률 제17311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4806호)
2. 운영목적: 다양한 유치원 밖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3. 내 용: 유치원 밖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마련

1)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 유치원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방안 ‣ 유아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유아 안전대책 방안** ‣ 유아,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그 밖에 원장이 체험학습 유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전 답사 ➡	○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 서식1)** ‣ 검토사항: 실시경로, 예정지와 활동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부합여부, 거리, 소요 시간, 수용인원, 안전·위생상태,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교사안전 연수 ➡	○ 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유아안전 교육 ➡	○ 참여 유아들에 대해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시해야 한다. **(교육 후 현장체험학습정보방에 공개-유치원은 해당없음)**
참여여부 조사 ➡	○ 체험학습 내용 사전안내 및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 미참가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비상연락 ➡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체계 구축		- 체험학습 참여 유아·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SM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인솔자 확보	➡	○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유아 26명(만5세 기준)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급당 인솔 교사 1명 이상 인솔할 수 있다(참여 유아 26명 기준 인솔 교사 1명 이상)
여행자 보험	➡	○ 유아·인솔자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 1일형 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 등)은 유아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프로그램 인증여부 확인	➡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인 만 9세 ~ 24세인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하므로 **○ 유치원의 경우는 프로그램 인증여부 확인에 해당되지 않음**
차량안전	➡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출반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 서식2) ○ 유아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감지 등) 요청-숙박형 체험학습 - 1일형 체험학습은 유치원 자체 음주감지 실시
미세먼지 수치확인	➡	○ 경기도교육청 안전매뉴얼에 근거한 '에어코리아 앱' 확인 - 4월 현장학습 실시 당일 오전7시 미세먼지 기준 80㎍/㎥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에 한하여 현장학습 연기 및 취소(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오는 체험학습」 또는 「공연」으로 변경 운영

2) 현장학습 사전· 사후 안전지도 계획

가. 체험학습 전 안전교육실시

-교사 안전교육: 행정실장 000, 교사 000, 교사 000, 안전전반 인솔교사협의

-유아 안전교육: 학급별 안전교육 진행(교통수단별 안전교육, 현장학습지에 따른 안전교육) 현장학습 당일, 학급 내 담임교사에 의한 안전교육 진행

나. 사전학습 자료를 활용 생활주제 관련 사전지도 철저

다. 사전 질서지도 및 안전지도 내용

-환경안전: 미세먼지 수치 확인

-버스안전: 승.하차 시 안전, 안전벨트(카시트) 착용, 교사 지시에 의한 안전 하차

-활동안전: 현장학습장소 및 기물 사용 안전, 화장실 사용법, 단체 활동 지시 따르기 지도

라. 사전 안전.환경보호 지도(쓰레기 생산되지 않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일회용품 지양)

마. 사후 안전한 현장학습에 관한 평가 이야기 나누기 실시

바. 보호를 요하는 아동관리: 멀미, 알레르기, 천식 등

3) 체험 안전 지도계획

구 분	지 도 내 용
버스에서 승차할 때	□ 차례대로 줄을 서서 안전하게 승차한다. □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 □ 먼저 타려고 새치기 하지 않는다. □ 담임교사가 정해준 좌석에 앉는다.
버스에서 하차할 때	□ 차례대로 줄을 서서 안전하게 하차한다. □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 □ 자기 물건을 잘 챙긴다.

버스 안에서	▫ 손이나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 ▫ 쓰레기를 버스 바닥에 버리지 않는다. ▫ 안전벨트를 꼭 착용한다. ▫ 멀미를 한 아동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알려 준비하도록 한다. ▫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버스 안에서 일어서거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점심시간	▫ 점심식사를 하다가 돌아다니지 않는다. ▫ 쓰레기는 개인이 준비한 비닐봉지에 모아서 가정으로 되가져간다. ▫ 불량 식품을 사먹지 않으며 상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 담임교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 혼자 돌아다니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 화장실에 갈 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혼자 가지 않고 인솔교사와 함께 간다. ▫ 체험학습 장소의 시설이나 전시물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 ▫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 낯선 사람이 날 만지면“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큰 소리로 외친다. ▫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친다.
기타 지킬 일	▫ 지정된 장소에서만 활동 한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담임교사를 기다린다. ▫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께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담임교사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알림)
현장체험학습 후	▫ 몸 깨끗이 씻기 ▫ 충분한 휴식 취하기

4) 사안 발생 시 대응체계

가.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나. 유치원·교사·유아·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다. 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하고,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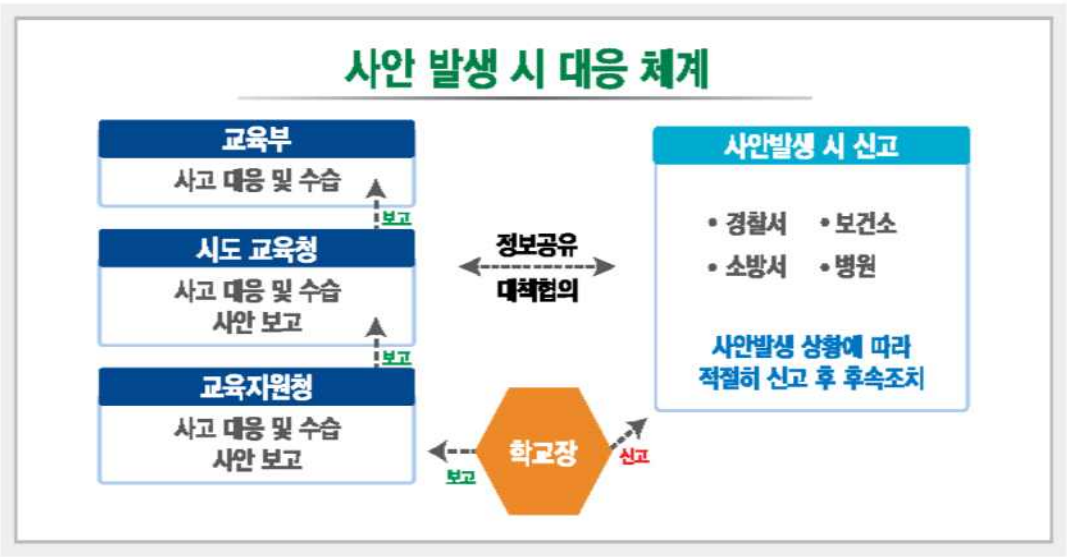

라. 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경기도 학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도교육청 체험학습안전담당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한다.

• 유치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반드시 업무담당과, 학생안전과 동시 보고)
【유아교육과 ☎ 주간 031-249-0263, FAX 031-253-6209, 야간 031-249-0342】
【학생안전과 ☎ 주간 031-820-0790~3, FAX 031-821-1098, 야간 031-820-0514, 0524】
※ 유치원은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업무주무부서와 학생안전과에 동시 보고할 것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4. 기대효과
1) 응급 및 비상 상황 시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일상생활 속 상황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대처능력을 기른다.
3)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외부현장체험학습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상황이 바뀌어 외부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46안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47안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세부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가.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유아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함.
나. 유아의 사회성, 창의성 등 전인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다. 학부모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함.
라. 민주시민 의식, 양보, 배려, 나눔, 협동성, 사회성, 준법정신 등을 함양하고자 함.
2. 근거
가. 유아교육법 제 19조의4(2017.02.08.)
나. 202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
3. 주요내용
- 2022학년도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참고자료
-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사 일정
5. 주요내용(원내체험 계획)

학기	월	대상	체험명	장소	일시	경비 산출내역 및 소요액	비고
1	3	만 3,4,5세	인형극	각 반 교실	3.21(월) ~3.24(목)	• 체험비(비대면) : 400,000원*1회=400,000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 1학기 체험학습 활동은
	4	만 3,4,5세	매직 버블쇼	각 반 교실/강당	4.13(수) ~4.14(목)	• 체험비(비대면 진행 시) : 700,000원*1회=700,000원 • 체험비(대면 진행 시) : 375,000원*4회=1,500,000원	

	5	만 3,4,5세	종합 스포츠놀이	강당	5.2(월) ~5.4(수)	• 체험비 : 1,600,000원*1회=1,600,000원	비대면으로 계획함
		만 3,4,5세	원예체험 활동	각 반 교실	5.6(금)	• 체험비(비대면 진행 시) : 20,000원*328명=6,560,000원	
						• 체험비(대면 진행 시) : 22,000원*328명=7,216,000원	
	6	만 3,4,5세	목공놀이	각 반 교실	6.14.(화) ~ 6.16.(목)	• 체험비 : 15,000원*84명=1,260,000원	
						• 체험비 : 15,000원*88명=1,320,000원	
						• 체험비 : 15,000원*156명=2,340,000원	
	7	만 3,4,5세	샌드아트	각 반 교실/강당	7.13.(수) (대면 진행 시 4일 소요 예정)	• 체험비(비대면 공연, 체험) : 700,000원*1회+5,000원*340명 =2,400,000원	
						• 체험비(대면 공연, 체험) : 500,000원*16회=8,000,000원	
2	9	만 3,4,5세	국악인형극	각 반 교실/강당	9.23(목) ~9.24(금)	• 체험비(비대면 진행 시) : 500,000원*1회=500,000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 2학기 체험학습 활동은 대면으로 계획함
						• 체험비(대면 진행 시) : 500,000원*4회=2,000,000원	
	10	만 3,4,5세	도예 체험	각 반 교실	10.4(화) ~10.5(수)	• 체험비 : 15,000원*328명=4,920,000원	
		만 3,4,5세	동화클래식	각 반 교실/강당	10.20.(목)	• 체험비(비대면 진행 시) : 580,000원*1회=580,000원	
						• 체험비(대면 진행 시) : 580,000원*4회=2,320,000원	
	11	만 3세	부스체험 -오감아 놀자	강당	11.30(수)	• 체험비 : 15,000원*84명=1,260,000원	
		만 4세	부스체험 -미술아 놀자	강당	11.23(수)	• 체험비 : 15,000원*88명=1,320,000원	
		만 5세	부스체험 -과학아 놀자	강당	11.16(수)	• 체험비 : 15,000원*156명=2,340,000원	
	12	만 3세	케이크 만들기	돌봄교실	12.20.(화)	• 체험비 : 18,000원*84명=1,512,000원	
		만 4세	케이크 만들기	돌봄교실	12.20.(화)	• 체험비 : 18,000원*88명=1,584,000원	
		만 5세	케이크 만들기	돌봄교실	12.21.(수)	• 체험비 : 18,000원*156명=2,808,000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외부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될 수 있음

※원내체험 활동경비는 누리과정비에서 지출함

※원내 체험 날짜 및 가격은 유치원과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47안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세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48안 2022학년도 유치원 안전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유치원 안전계획을 심의하여 유아중심 현장중심 재난, 안전관리 체계 및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토대를 구축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유아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22학년도 유치원 안전교육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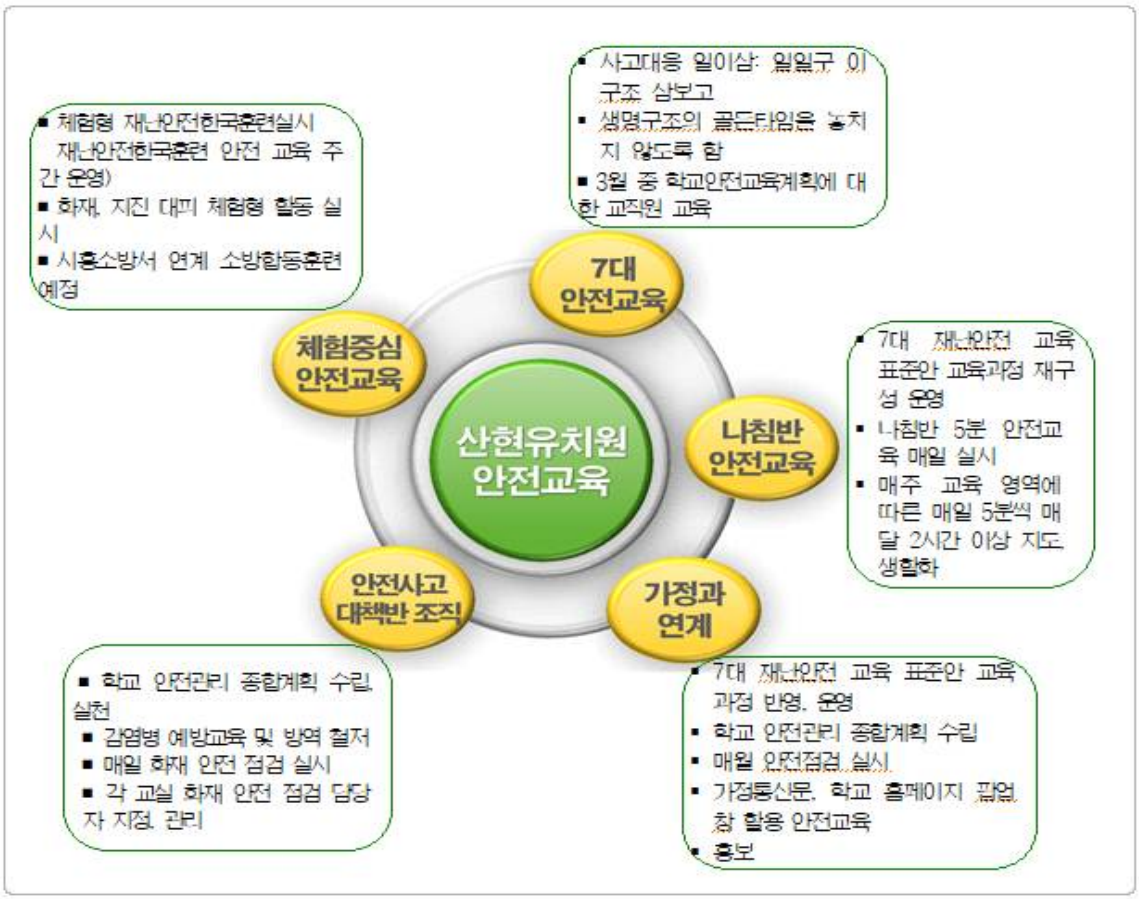

2022학년도

유치원 안전 계획(안)

산현유치원
SANHYEON KINDERGARTEN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59-4
☎ 031-405-3115, http://www.sanhyun.kg.kr

목 차

Ⅰ. 유치원 안전계획 개요 ····· 1
1. 관련 근거 ····· 1
2. 유치원 계획 ····· 1

Ⅱ. 유치원 현황 및 조직체계 ····· 3
1. 유치원 현황 ····· 3
2. 유치원 안전조직 ····· 4

Ⅲ. 예방 활동 ····· 13
1. 유치원과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방침과 절차 ····· 13
2. 방문객의 위치와 출입방침과 절차 ····· 13
3. 물품 수령방침과 절차 ····· 13
4.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방침 ····· 14
5. 원내 차량 동행 및 주차관리방침 ····· 14
6. 보관구역 관리방침 ····· 14
7. 교무실과 각 교실간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현황 ····· 14
8.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현황 및 안전관리 ····· 16
9. 비상대피로 안내 ····· 16
10. 방과후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 18
11. 연간나침반 5분 안전교육 및 생활 안전수칙 ····· 18
12. 안전한 학교 풍토의 조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21
13. 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안전교육계획 ····· 26
14.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계획 ····· 27
15. 감염병예방 안전관리 계획 ····· 29
16. 미세먼지 대응 세부 행동요령 ····· 32

Ⅳ. 대비 활동 ····· 34
1. 재난 대응 합동 훈련 계획 ····· 34
2. 원내 화재 대피훈련 계획 ····· 34
3. 지진 대피 훈련 계획 ····· 35
4.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 36

Ⅴ. 대응 절차와 행동 수칙 ····· 37
1. 의료사고유형별 행동수칙 ····· 37
2. 재난발생시 행동수칙 ····· 39

Ⅵ. 복구 활동 ····· 44
1. 재난사고 발생시 심리적 치료 체계 구축 ····· 44

[부록]
1.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47
2.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 48
3. 안전사고 발생 시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 49
4. 안전점검표 ····· 50

Ⅰ 유치원 안전계획 개요

1.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2ㅔ 17조, 제 21조 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 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 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유치원안전교육)
□ 경기도 안전교육과정
□ 2022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2. 유치원 계획

가. 비전과 목적

비 전

365일 안전한 유치원, 행복한 유아

목 표

유아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유치원 토대 구축

중점 과제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2. 유치원 안전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유치원 및 유치원 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유아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1. 유아 중심 현장 중심 안전교육 안착
2.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 활동 여건 조성

1. 교육 시설 안전성 강화
2. 교육 활동 안전성 강화 및 지원여건 구축

안전한 유치원 풍토 조성

1. 유치원 안전문화의 확산
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나. 중점과제 및 추진 내용

1.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유치원 안전교육 여건 조성

- 유치원 안전관리 위원회 조직 운영
- 교직원의 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 실시
-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으로 안전한 교육 시설 점검
-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비상매뉴얼 정비 및 비상배낭비치

2.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3. 안전한 유치원 풍토 조성

- 각종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안전 생활화
-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한 평가 활동 실시

다. 유치원계획의 수립 · 시행

● 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한다.

Ⅱ 유치원 현황 및 조직 체계

1. 유치원 현황

가. 일반 현황

유치원명	산현유치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59-4				
전 화	031-405-3115	FAX	031-405-3117	홈페이지	http://www.sanhyun.kg.kr
원 장	조○록	학교안전책임관	이○강	행정실장	장○선

나. 유아 및 교직원 현황(2022. 2. 10.기준)

유아 (명)	1학년(만3세)	2학년(만4세)	3학년(만5세)	합계

교직원 (명)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계
	원장	원감	교사	방과후교사	특수지도사	특수종일반	교무실무사	사회복무	행정실장	주무관	미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1	1	21	7	1	1	1	·	1	2	1	1	1	2	41

시설 현황	건축면적	건축전체면적	원장실	교사실	교실	돌봄교실	행정실	급식실
	2.044.57㎡	5.931.26㎡	1	3	18	2	1	1
	강당	도서관	보건실	특별실	방송실	자료실	실외놀이터	기타
	1	1	1	3	1	3	1	2

다. 유치원 위치도

라. 유치원 비상연락망

- 교직원: 각 교직원 휴대 또는 휴대폰 내 저장
- 학부모: 교무실 별도 보관

2. 유치원 안전 조직

가. 학교 안전관리 추진 조직

(유치원 비상대책반 : 감염병 대책기구와 일원화)

- 평상시: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 구성
- 유사시: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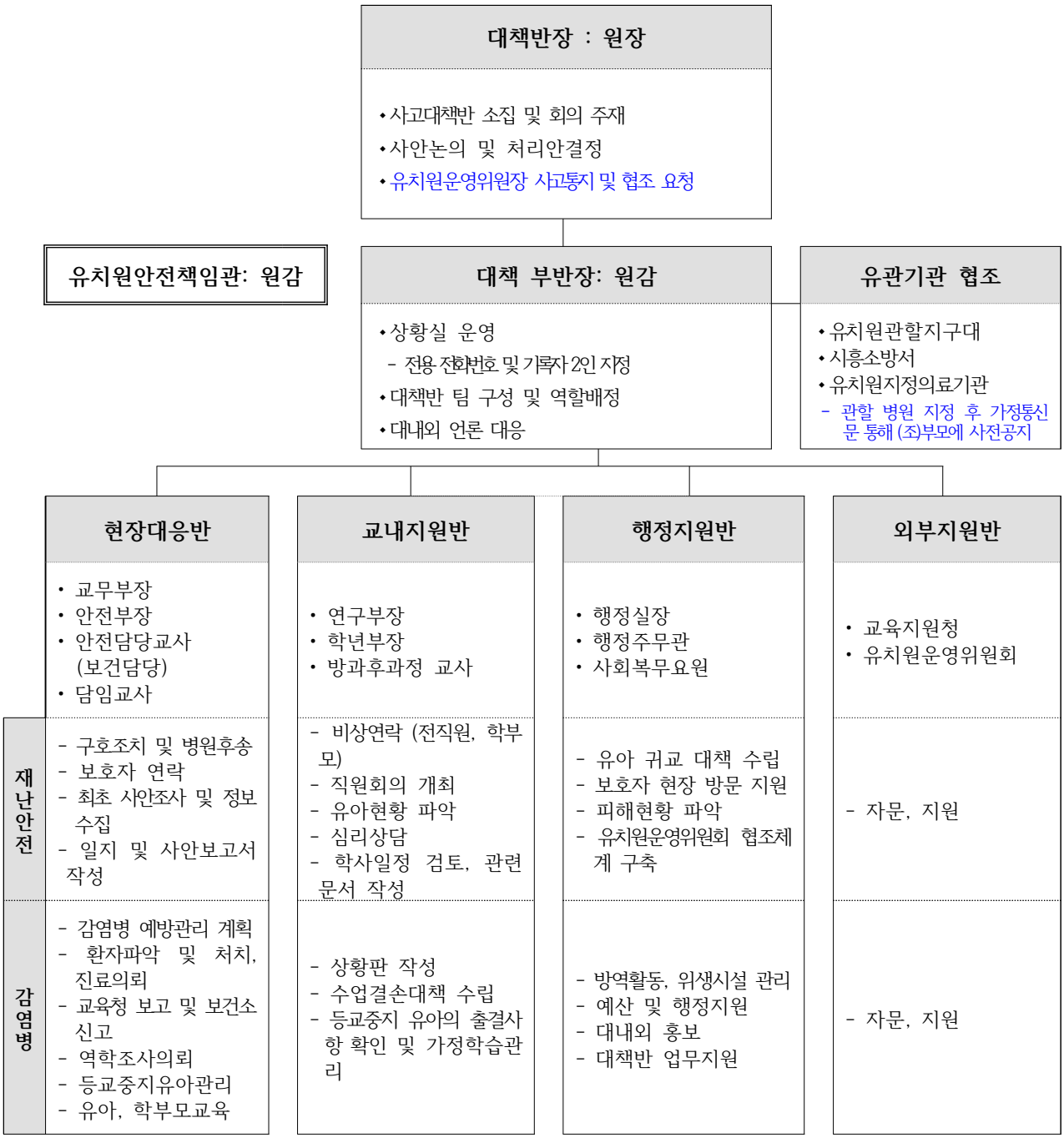

나. 재난 및 안전사고 표준대응 절차 및 구성원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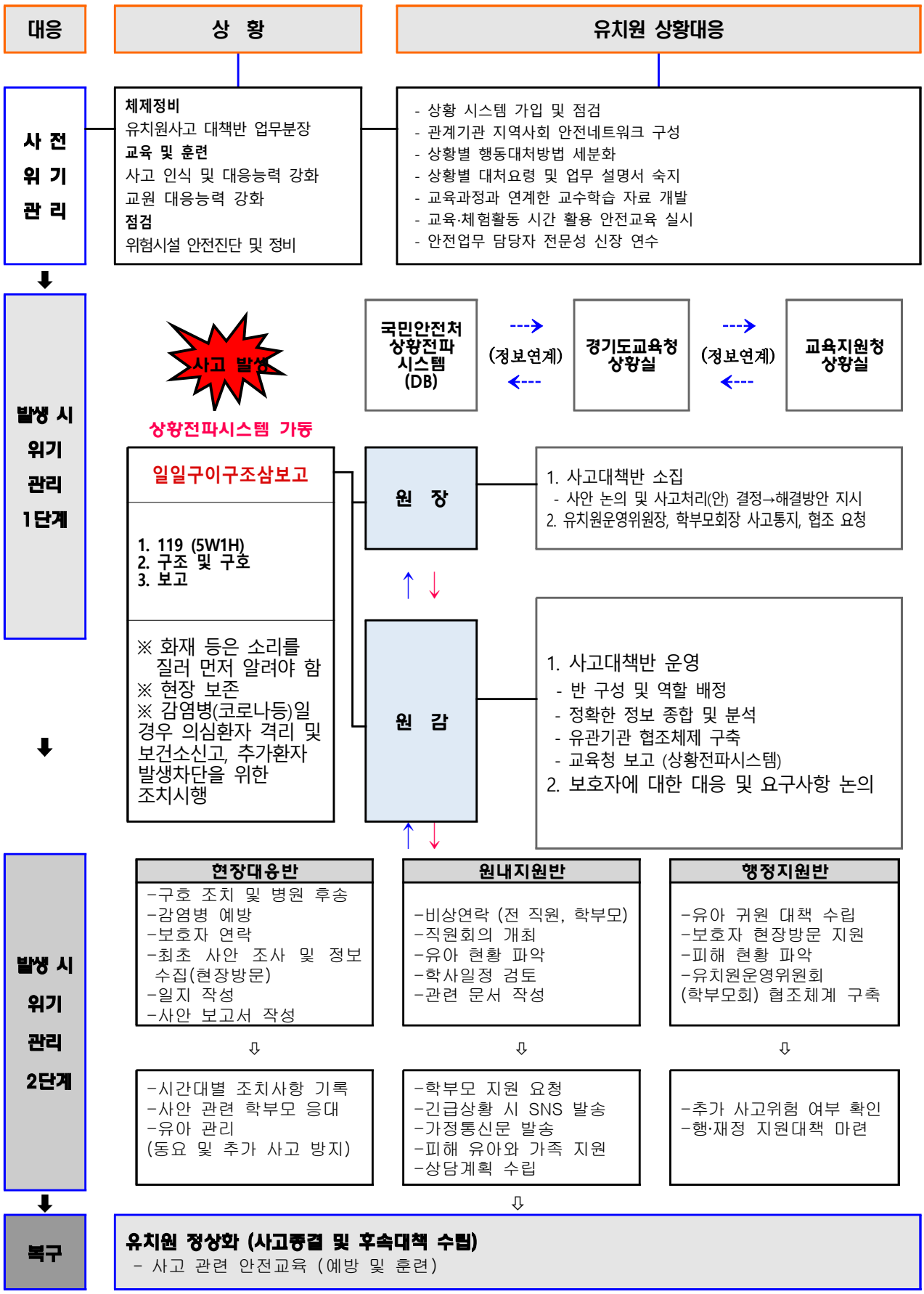

다.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반 임무

- 유치원 안전 관련 업무는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교원과 직원이 협력하여 추진
- 원장은 유치원 실정, 교직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 등 지정
- 업무 분장시, 부서간, 직원간, 교직원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정 권고

직, 책		임무	비고
최초 발견자		-일일구 이구조 상보고(5W1H, 국민안전처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 반장	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 논의 및 사고처리 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유치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 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원감 (안전 책임관)	- 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 상황 확인(대조표 검토) - 관계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 부반장과 반장)	
현장 대응반	교무부장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원감 부재 시 업무 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유아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안전부장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 최초 사안 조사 및 시안 보고서 작성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및 처리지원(담임 등 교직원)	
	보건담당	- 피해상황 종합 - 피해원아 후송병원별 원아인원 파악	
	사안 관련 교사(담임)	- 사안 관련 유아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 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유아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유치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유아와 교직원 등 보상)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원내 지원반	연구부장	- 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유아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 직원, 학부모) - 피해 유아와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정보부장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대조표, 일지 작성)지원	
	담임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유아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	- 유아 귀원 대책(이동수단 확보) 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위험 여부 확인 - 교육 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협력 지원 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유치원 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유치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라. 위기상황 신속대응 체계

1) 선조치 후보고

의미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119에 신고(심폐소생술 필요하면 동시, 즉시 시행)

→ 사고자 구조(심폐소생술 즉시 시행, 2차 사고 예방 등)

→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

* 생명 구조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2)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로 동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사고)

- 교육 활동 중 사고 :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 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유치원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
- 유치원 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유치원 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유치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 기타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교육부 보고방법 : moe119@moe.go.kr 안전대표 메일 신설(24시간 가동)
- 도교육청 보고방법 : 사안별 해당 부서(부서장은 상황판단 회의 요청 여부 결정)

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해당 부서

주요 사안	해당 부서	연락처	비고
급식, 식중독 등	교육급식과	031-249-0451~0455	
건강, 보건, 환경, 위생	체육 건강교육과	031-249-0593~0597	
체육교육, 학교운동부	체육 건강교육과	031-249-0292~0293	
과학 실험·실습	특성화교육과	031-820-0593~0595	
자연재난, 화재, 승강기 등	재난 예방과	031-820-0727~0729	

3) 교육부 동시 보고 사안 이외의 재난, 안전사고 보고 체계

- 사안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해당 과에 전화 보고 후, 사안 보고서 제출

마.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 대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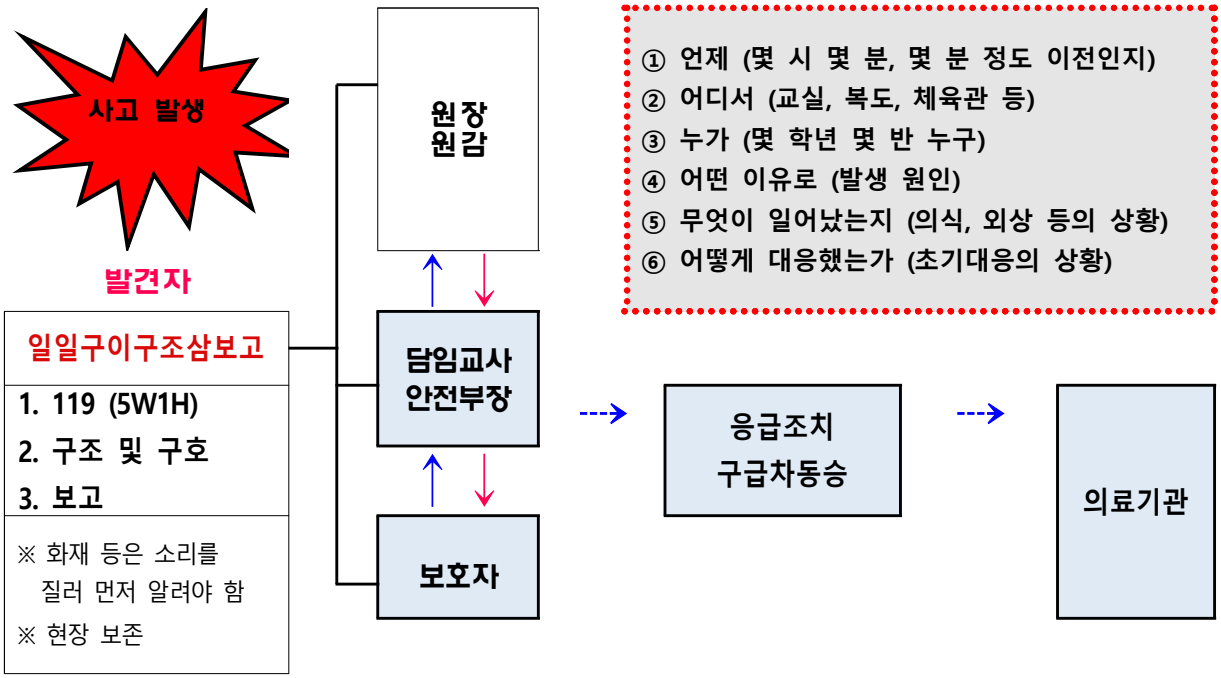

● 보호자 연락 시 유의사항:

"보호자 연락"은 :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인의 추측이 섞인 표현과 감상은 삼가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위급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긴급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사고 발생 상황과 상태에 대해 상세히 전달한다.
- 병원명과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묻는다.
- 사고를 당한 유아의 인도 장소, 시간에 대해 연락을 취한다.

바.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 구조기관 비상 연락망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 구조기관	전화번호
시흥교육지원청	031)488-2465
시흥경찰서	031)310-9153
시흥보건소	031)310-5830
연성지구소방서	031)310-0532
목감치안센터	031)487-0788
목감주민센터	031)310-4452
한림대병원	031)380-4129

사. 교직원 비상연락망 : 별도 보관

아.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전화번호

순번	종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비고
1	보안, 경비	㈜ 포콤	1588-2656	시흥시 대은로 4번길 5	
2	전기안전	㈜ 아진전기기술	031-507-0633	시흥시 서울대학로 264번길 35	
3	소방안전	㈜ 우리소방기술단	031-317-1109	시흥시 새재로 17번길 6	
4	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	1544-3002	시흥시 콘솔로 96번길 23	
5	승강기 보수	㈜ 대광엘리베이터	031-497-8400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87	
6	냉난방 점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031-488-8400	시흥시 동서로 180-4	

자.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사이렌	유선, 상황전파시스템 모바일 상황전파	가두 방송	시흥교육지원청
전파(내부)	원내 방송	음성 방송, 모바일 상황전파	타종,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차.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역 할
원장	◦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 원장은 항상 유아와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 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함 ◦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유치원의 사고지휘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
사고지휘관 (원감/ 행정실장, 유치원안전 책임관)	◦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지휘 ◦ 유아,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 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 ◦ 응급의료로 인해 유아,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 ◦ 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 지속적 제공
교사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들을 지도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유아,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처 ◦ 서면, 원내 방송, 인터컴, 개인 휴대전화, 신호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유아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

	역 할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유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유아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유치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유아의 인원 확인 ◦ 실종된 유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 ◦ 부상 유아가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필요할 시 응급처치 시행
방과후교사	◦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보건 담당교사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 ◦ 응급처치와 유치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기능직원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 지원 ◦ 사고지휘관이 유치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무직원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역할을 수행 ◦ 유치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 ◦ 원장과 재난 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 ◦ 필요한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
영양교사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유아와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
유아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
학부모/보호자	◦ 유치원안전, 폭력 예방,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 ◦ 재난에 대한 유치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 재난과 관련하여 유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유치원에 제공 ◦ 유치원에서 교육 또는 훈련받은 재난대응 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 ◦ 유치원이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

차. 교직원 위기대응 연수 계획

연수명	연수내용	연수시간	이수인원
직장 내 4대 의무교육 교직원 연수	(성희롱 예방, 산업 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소방안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장애인식개선교육)	6	
학교 안전교육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학교 안전교육	15(평균)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	2시간	전 교직원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교직원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1시간	전 교직원 대상

Ⅲ 예방 활동

1. 유치원과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가. 안전관리 방침

1) 재난 종류 및 위험도에 따라 출입구 및 비상구 개폐 신속 결정(대책반장, 원장)

2) 외부인 및 위험물 1차 검수(당직실) 및 보관 사용 관리 지정(각 담당자)

나. 출입지점 재난대응 절차

재난 종류 및 위험도 파악 - 출입구 및 비상구 개폐 결정 - 대피 순서 및 차단 확인

2. 방문객의 유치원 출입 방침과 절차

가. 본원 방문 시 지켜야 할 사항 (방문증 제도)

1) 방문객은 교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방문 시 (출입 차량)에는 행정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제시하여야 한다.

3) 출입증은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원 방문 및 방문증 발급 장소·절차

1) 방문증 발급 장소: 현관 입구 행정실(08:40 ~ 16:40 근무 시간)

출입 절차

행정실 방문 → 본원 방문 대장 기록 및 신분증 제출 →
방문증 발급, 달기 → 방문증 반납 및 신분증 회수

다. 본 원장이 출입거부·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상행위 목적이나 교직원이 출입을 제한한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위의 출입 관수칙 위반 등 유치원 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입이 거부됨

3. 물품 수령방침과 절차

	내용
수령방침	◦ 각종 위험물 차단 및 해당 물품의 담당/소유자 확인 ◦ 위험물, 부패 가능 식음료의 안전 보관 ◦ 사적 물품 수령 금지
수령절차	◦ 물품 종류(위험물, 식음료, 기타 물품), 수령인 확인 ◦ 검수 장소(교무실, 행정실), 수령인 파악 ◦ 수령인의 직접적인 검수 및 수령

4.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방침

가. 방침

원내 행정/교무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원감, 행정실장의 각 실 잠금장치 및 마스터키의 관리책임 부여

나. 관리 방법

1) 전실(방학 중 교실 및 기관실 포함) 마스터키의 교육행정실 보관
2) 학기 중 교실 잠금장치 및 마스터키 교무실 보관
3) 각 기관실(전기실, 엘리베이터실 등), 출입구 잠금장치 및 마스터키 당직실 보관

5. 원내 차량 동행 및 주자 관리방침

가. 차량 통행 및 주차 관리

교직원의 출퇴근 및 원아 등·하원 시 인명사고 방지 및 외부인 출입통제

나. 관리 및 통제 방법

1) 외부 차량 출입
교직원 출입 차량 및 비상 차량(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을 제외한 외부 차량의 출입 시 당직실 담당자의 1차 통제 및 방문 담당자의 출입안전 확인(외부인 포함)
2) 근무 시간 내 주차장 외부 출입로의 항시 개방 및 유치원 인접도로의 외부주차 차량통제
3) 교직원 차량요일제의 철저한 준수

6. 보관구역 관리방침

가. 시설 장비 및 화학물질 기타 위험물 관리

1) 원아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공간(지하 공간 내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각종 창고)에 보관
2) 원아의 동선과 겹치는 각층 전기 및 소방 장비는 잠금장치 및 출입통제 확인 철저

7.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 현황

가. 교무실과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정전 또는 전화 단선 시 각층별 비상 무전기 또는 음력전화기 설치 및 보관한다.

나. 인터넷 내선 번호, 인터폰 번호 현황(생략)

8.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현황 및 안전관리

가. 원내 시설 개방 방침

1) 보안상의 이유로 원내 시설(교실, 강당 등)의 원칙적 개방 금지

2)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방은 요구처의 사용 안전계획 검토 후 예외적 허용

나. 안전관리

1) 사용기관의 시설 사용/안전계획서 및 관련 공문 검토 후 이용방침 통보

2) 이용 후의 위험요소 제거 확인

9. 비상 대피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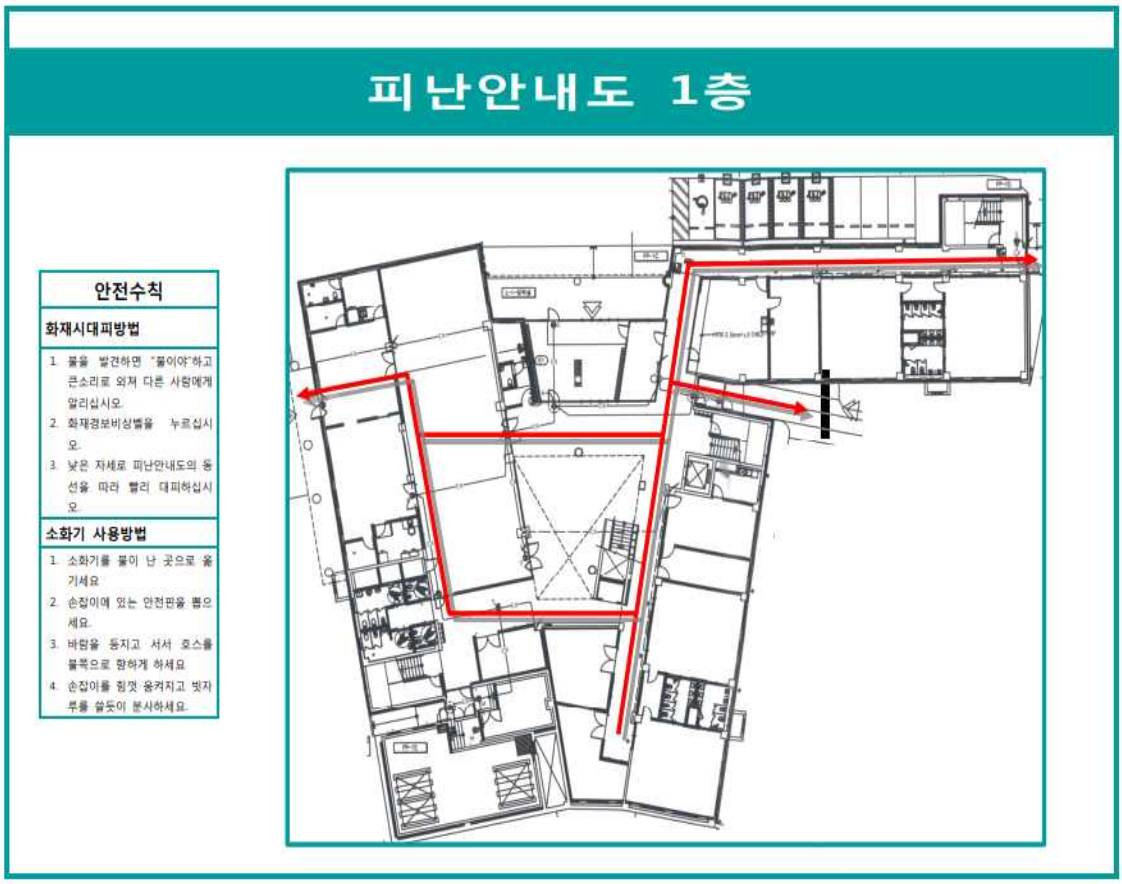

피난안내도 2층

안전수칙

화재시대피방법

1.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2. 화재경보비상벨을 누르십시오.
3. 낮은 자세로 피난안내도의 동선을 따라 빨리 대피하십시오.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세요
2. 손잡이에 있는 안전핀을 뽑으세요.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지고 빗자루를 쓸듯이 분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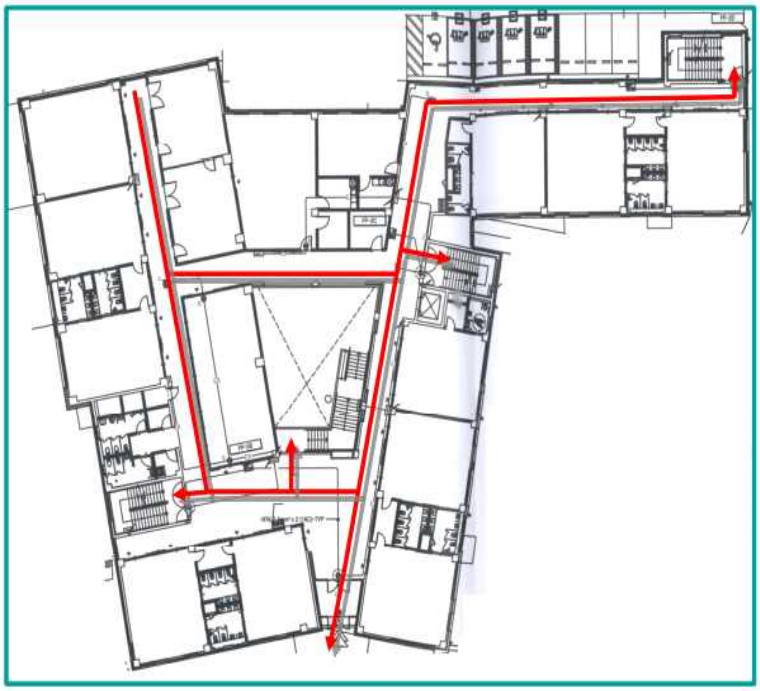

피난안내도 3층

안전수칙

화재시대피방법

1.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2. 화재경보비상벨을 누르십시오.
3. 낮은 자세로 피난안내도의 동선을 따라 빨리 대피하십시오.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세요
2. 손잡이에 있는 안전핀을 뽑으세요.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지고 빗자루를 쓸듯이 분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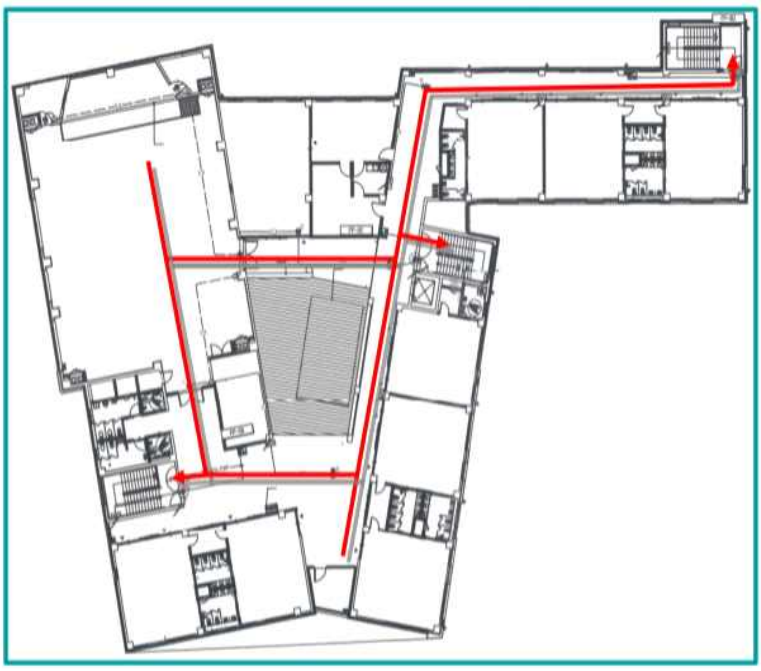

10. 방과후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가. 학급 현황

구분 / 인원	학 급 현 황							합계
	새싹 1반	새싹 2반	잎새 1반	잎새 2반	열매1반	열매2반	열매3반	
원 아 수	14	14	22	22	26	26	26	150

나. 안전관리 계획

	관리 내용
유아 관리	◆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안전 및 시설관리 요령 - 유아 보호자 비상 연락망 구축 활용 - 교실 사용 후 창문 및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 전기 장치와 냉난방기 확인 후 전원을 차단하여 책임 있는 관리 실시 (유치원 야간 관리 담당자 원내·외 순시 철저) ◆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관리와 하원 지도 - 방과후과정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는 유아 확인 후 하원 지도를 시행 (방과후과정전담사는 유아들에 교통규칙 준수 및 안전지도 후 유치원문 앞까지 동 행하여 하원 지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행 - 유아, 교직원, 방과후교사 등 안전 도모에 관한 교육 시행 ◆ 유치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 외부인 방문증 달기 의무화(방문증 교부-경비실 또는 행정실) - 무단 외부인 식별, 신고, 단속 등 관리 요령 숙지 - 외부인과 구분하기 위한 외부 강사 표식(명찰) 착용

11. 연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및 생활 안전수칙

가. 목적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유치원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방침

1) 유아, 교직원과 학부모의 안전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 시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2)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안전을 생활화한다.(별도 계획 수립)
3)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후 원인, 과정, 결과, 조치, 교훈 등 평가한다.

다. 유치원 내에서의 시설물 사용 및 급식 안전교육

		지도 내용
교실 복도 계단 난간	유아 안전 수칙	• 교실이나 복도에서 공놀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하지 않는다. • 두세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고 계단 난간을 넘거나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 반드시 우측통행을 한다.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앞사람과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 •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한다. •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므로 삼간다. •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는다.
책걸상	교사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또는 충격 완화 고무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예방한다. • 책·걸상의 정기적 수리 및 교체, 안전도 유지 및 못 등 돌출부에 의한 자상을 방지한다.
	유아 안전 수칙	• 책걸상에 걸터앉지 않는다. • 의자에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 좁은 통로에서 뛰지 않는다.
화장실	교사	• 세균에 따라 일반적인 손 세척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세균도 있다. 따라서 위생적인 손 씻기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익히게 지도한다.
	유아 안전 수칙	•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서서 이용한다. • 화장실 사용 후에 물을 반드시 내린다. •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면 세균, 먼지를 씻어내 주어 전염병의 70%를 예방한다.
점심시간 <급식실>	교사	• 평소에 예절교육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배식 과정에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앞 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흐르게 되면 미끄러워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만약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을 경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휴지로 닦도록 한다.
	유아 안전 수칙	<배식 시> • 손을 씻고 질서 있게 급식실로 내려온다. • 차례로 줄을 서서 서두르지 않고 배식대에 한 줄로 선다. • 식판, 수저는 고르지 않고 순서대로 잡으며 옷 등에 갖다 대어 문지르지 않는다. • 배식할 때는 장난을 치지 말고 차례를 기다린다. • 식판을 옮길 때는 주변에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흘리거나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식판을 옮길 때는 두 손으로 옮기도록 한다. <급식도구 사용 시> • 급식 도구의 사용법대로 바르게 사용한다. • 젓가락으로 친구를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숟가락과 젓가락(포크)을 구부리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 • 음식물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킨다. • 입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정리> • 질서 있게 잔반 처리를 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상황		유치원 교사 행동요령
국 국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데었을 때		• 상처 부위에 냉수를 끼얹거나 냉수에 담가서 상처 부위의 열을 식힌다. •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는 물줄기가 너무 세어 상처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수압을 조절한다. •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민간요법으로 간장이나 된장을 바르는 것은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좋지 않다. • 상처에 탈지면이나 기타 기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식중독 발생 시		• 식중독이나 단체 질병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유아들이 섭취하던 음식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담임과 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유치원 전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부상 발생 시		• 유아의 부상 정도를 알아보고, 응급처치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다. •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속히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물질을 삼켰을 때	식도에 걸린 경우	• 증상 : 호흡하기가 힘들고, 식도의 벽을 손상했을 경우 열이 오르며, 음식물을 삼킬 때 고통을 느낀다.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기도 한다. • 응급처치 : 혀를 앞쪽으로 끌어내듯 해서 구역질을 하여 이물질을 토하게 한다.
	기도에 걸린 경우	• 증상 : 얼굴빛이 금세 파래지고, 기도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말과 기침, 호흡도 할 수 없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 응급처치 : 하임리히 요법 시행 1) 처치자는 환자의 등 뒤에 선다. 2) 한쪽 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싼다. 3)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방향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끝의 중앙 부분에 둔다. 4)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후 빠르게 후상 방으로 환자의 배를 밀쳐 올린다. 5)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반복한다. 6)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말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유도하며, 지속해서 기침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는 119에 연락한다. ※ 주의사항: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하다가 오히려 이물질이 깊숙이 들어가거나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한 후 실시한다.
	기관지에 걸린 경우	• 증상 : 침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심하게 한다. • 응급처치 : 이물질을 꺼내려 하지 말고 등을 두드리거나 하여 아래로 내려보낸다.

12.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육법령 및 추진내용에 따른 안전교육

1)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생활안전교육	시설 및 제품안전, 실내·실외활동, 신체활동·여가활동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13시간)
교통안전교육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 안전	학기당 3회 이상 (연간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 예방,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예방, 가정 폭력 예방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10시간)
재난안전교육	화재, 폭발·붕괴, 테러사고, 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등)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6시간)
직업안전교육	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안전 예방 및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착용 등)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이해와 중요성,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상황별 응급처치(기도폐쇄, 지혈,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안전교육 충실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주기 (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이상)
교육 내용	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 법규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그 밖의 교통 안전관련내용	1. 아동 실종 발생 현황 2. 장소·상황별 실종 유괴 예방지침 3. 유괴·유인시 대처 방법 4. 유괴·유인목격시 신고요령 및 절차	1. 약물의종류·중독 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그 밖에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 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발생 현황 2. 성폭력 예방지침 3. 성폭력 예방실습 4. 성폭력범죄발생시 대처방법 5. 법적 처벌 및 취업 제한 규정 6. 성폭력 범죄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교육 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실종사례 분석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3. 사고 사례 분석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고 사례분석

3)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건강교육 실시

구분	세부 내용	관련법령	비고
보건 교육	응급처치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수시반영
식생활 교육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연간 2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연간 1회 이상(6월)

4)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 하루일과 중 등·하원 지도시간, 점심시간, 교육활동 시간을 이용한 5분 안전교육 실시
- 분야: 화재안전, 보건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 학부모 대상 : 5분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가정연계자료 홈페이지 게시

5) **안전점검의 날 운영**

가)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4 (안전점검의 날)

나) 운영목적 :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다) 운영방침 : 매월 4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항상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철저

라) 세부계획

- 매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하는 '안전점검의 날'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각 교실의 안전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안전점검표에 기록한다.

나.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비상훈련 및 교직원 연수	시설관리
3월	·입학식 ·유치원 안전계획 작성 요양호 유아관리	·유치원 원내생활안전교육 놀이시설 안전교육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연간 훈련계획 교직원 연수	·매월 안전점검의 날
4월	·학부모 상담주간 ·1학기 체격검사	미세먼지 안전교육·	·화재 대피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1분기 기관장 참여 취약시설 안전점검
5월	어린이날 행사 ·학부모 공개수업	찾아오는 교통안전교육 ·화재 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민방위의 날 (전국 민방공대피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6월	흙놀이 체험	·유아심폐소생술 교육 ·식중독, 전염병 예방교육	·소방합동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7월	·여름방학식	·폭염, 태풍, 호우 대비 안전교육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2분기 기관장 참여 취약시설 안전점검
8월	·개학식	·방학 중 교내 ·외 안전교육 ·폭염 및 태풍 피해 대비 행동요령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9월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지진대피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10월	·학부모상담 ·학부모 공개수업 ·2학기 체격검사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화재대피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3분기 기관장 참여 취약시설 안전점검
11월	·교원능력개발평가 2022학년도 신입유아모집	미세먼지 계기교육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전국 지진대피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유치원 시설안전점검 결과보고
12월	·수료식 및 졸업식	·겨울철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월				·매월 안전점검의 날 ·4분기 기관장 참여 취약시설 안전점검
2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해빙기 대비 시설안전점검

※학사일정 및 비상훈련계획은 유치원 사정에 따라 변경동될 수 있음

다. 교육부 7대 표준안에 따른 유아안전교육 계획

월	안전 교육 내용		월	안전 교육 내용	
	안전 영역	안전 활동 명		안전 영역	안전 활동 명
3	교통안전교육	안전하게 걸어요	8	생활안전교육	음식에는 비밀이 있어요
	생활안전교육	모험이가 처음 유치원에 온 날(안전한 놀이방법)	9	교통안전교육	안전하게 킥보드를 타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약물)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내 몸은 소중해요(성폭력)
	직업안전교육	어른들도 다칠 수 있어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스마트폰이 무서워
	교통안전교육	안전한 장소에서 놀아요		교통안전교육	배에서 사고나면 이렇게 탈출해요
	재난안전교육	나쁜 미세먼지 이렇게 물리쳐요		재난안전교육	빨간모자와 미세먼지
4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교통안전교육	비행기에서 사고나면 이렇게 탈출해요
	생활안전교육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해요	10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엄마,아빠 술은 안돼요(약물)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TV를 올바르게 시청해요		생활안전교육	안전한 캠핑을 해요
	생활안전교육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기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친구가 놀아주지 않아요(학교폭력)
	재난안전교육	불이야! 불이야(소방대피훈련)		교통안전교육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요
5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소중한 나와 우리! 우리가 지켜요		생활안전교육	전자파에서 멀리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응급처치교육	코피가 났어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콜록콜록 담배연기 싫어요!(약물)	11	재난안전교육	지진대피훈련을 해요
	응급처치교육	도와줘요 119 (119신고)		생활안전교육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요
	교통안전교육	안전띠를 매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건강 체조를 해요 (사이버중독)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엄마, 아빠 때리지 마세요(아동학대예방)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가정폭력)
	생활안전교육	길을 잃었어요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표지판
6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인터넷 예절(사이버중독)		생활안전 교육	승강기와 엘리베이터 안전
	교통안전교육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2	직업안전교육	아이쿠가 줄었어요(직업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좋은 느낌 싫은 느낌(성폭력)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몽구는 요리사(약물)
	생활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배가 아파요!		생활안전교육	신나고 안전한 썰매안전
	재난안전교육	집중호우가 오면 이렇게 지켜요		재난안전교육	눈 오는 날
7	생활안전교육	물놀이 안전수칙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숲속 마을의 우당탕 스마트폰 대소동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너는 특별하단다(자살예방 및 대처)		생활안전교육	도전! 안전골든벨 O,X 퀴즈
	약물 및 사이버중독교육	몸에 좋지 않은 음료수(약물)			

◎ 경기도 안전교육과정(경기도교육청)

라. 성교육 실시 계획

1) 유아 성행동 수준 진단

-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수준별 유아 성행동 기준에 따라 성행동 진단

구분	수준	판단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려움 ▸잠시 멈추었다가도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함 등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강요 및 폭력성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 ▸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임 등

2) 성행동 문제 대응 관리

- 수시 관찰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 체계 유지

행동 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유치원 대응	▪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 ▪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 교육 ▪유치원 초기 대응 철저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 요청	▪행동중지, 상황 파악 ▪부모 면담 ▪유치원 사안 대응 지원단 운영 ▪(필요시) 학부모, 유아 대상 관련 교육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컨설팅 지원 요청	▪즉시 중지, 분리 조치, 모든 유아 보호 ▪상황 파악 ▪보호자 연락, 피해 아동 치료 연계 ▪유치원 사안 대응지원단 운영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및 지원 요청

3) 유치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대응 체계

4) 유아 성교육 연간교육 계획

-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한 성교육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표준과 양안			성교육 활동명	교육 방법
영역	주제	내용요소		
인간 발달	나의 몸과 마음	소중한 나의 몸	소중하고 특별한 우리몸	
		나의 출생과 성장과정 알기	내 몸이 자라요!	
	나의 몸과 마음	내 몸의 구조와 기능 알기	어떻게 달라요?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기분을 말해 봐	
	남녀의 성과 생활	남녀의 생활	남자 여자는 어떻게 다를까?	
인간 관계	소중한 가족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난,소중하니까요/ 집안일, 엄마만의 일이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친구의 의미 알기, 친구 간의 예절 지키기	이런 장난은 싫어요/ 친구야! 네 생각은 어떠니?	
	결혼의 의미와 나	결혼, 부모와 나의 관계	가족이라서 행복해요	
성 건강	내 몸의 관리	내 몸의 청결한 관리와 옷차림	쓱쓱싹싹 목욕체조	
		생식기 건강을 위한 상황에 맞는 옷차림	옷을 깨끗이 입어요	
사회와 문화	**성폭력의 예방**	타인의 성적 강요 행동과 언어	**혼자가 아니야**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대처	**나쁜 비밀이 있어요**	
	성역할	성역할과 양성평등	우리가 하는 일(동화)	
	인터넷 등 미디어 사용	인터넷 등 미디어의 특성과 바른 사용	스마트 폰이 무서워	

마.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가)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교직원

다) 신고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함

라) 교육: 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1시간 이상 교육

마)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3) 세부 추진계획

대상	추진내용	시기	비고
교사	•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7대 안전교육에 포함) •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 및 강사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예방 전담기구 구성 • 아동학대 피해(의심)자 관리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 있는 경우 즉시 신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	연중 3월 3월 연중	
유아	• 나의 몸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 교육 • 나침반 안전교육 실시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 토의, 동화, 게임, 미술, 역할극, 새노래 등 • 강사 초빙교육 및 인형극 관람	매일 매일 연중 연중	
학부모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아동학대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통한 부모교육 실시	3월 연중	

	아동 학대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구성	**원장, 원감, 담임교사, 안전담당교사로 구성**	
역할	담임교사	• 사안조사 시 피해 · 가해 유아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함
	안전 담당교사	• 피해 · 가해 유아의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함 • 신속하게 피해 유아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사안일 경우 119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 유아 병원 이송 시 동승함
	원장 (원감)	• 유아에 대한 조사과정 자체가 상담의 과정이므로 상담의 기본 태도를 지키면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함 • 아동학대 유아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 정서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유아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함

13.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계획

가.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계획

구분	영역	안전교육내용	교육형태
3월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 전달연수 안전교육 15시간 연수 안내	교사 자체연수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 자체연수
4월	성폭력예방	성교육 및 초기대응 방안 교육	교사 자체연수
5월	재난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수 화재대피 연수	교사 자체연수
6월	성폭력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 초청 또는 교사 자체 연수
9월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사 자체연수
10월	재난안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수	교사 자체연수
11월	약물·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교사 자체연수

나.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구분	영역	안전교육내용	교육형태
3월	폭력 및 신변안전 교통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전한 유치원 생활	오리엔테이션 가정통신문
4월	미세먼지	미세먼지 예방	가정통신문
5월	폭력 및 신변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6월	생활안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유괴 예방	가정통신문
7월	생활안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가정통신문
9월	교통안전	보호장구 착용	가정통신문
10월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가정통신문
11월	약물·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12월	재난 대비	겨울철 눈 오는 날 안전	가정통신문

14.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계획

가. 체험학습 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사전 답사	➡	◦ 교육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 답사를 1회 실시
교사안전연수	➡	◦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교사는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사전 안전연수 실시
유아 안전교육	➡	◦ 참여 유아들에 대해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시
참여 여부 조사	➡	◦ 체험학습 내용 사전안내 및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비상연락체계 구축	➡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 체험학습 참여 유아·학부모와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하면 SMS (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나. 현장체험학습 지도 내용

	지도 내용
출발 전	•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마련 •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 명시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요청 ※ 유치원→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팩스로 요청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 • 유아 수송 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 ※ 유치원→해당 유치원 담당 경찰서로 공문 요청
유아	•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지도 교사에게 즉시 보고 • 교육 활동 중 해로운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기 •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
교사	•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인솔 및 지도교사는 체험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 활동을 총괄하고 지도교사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 인솔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 약품 등을 준비 •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유아가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 • 교통안전 지도, 화재 예방지도,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 예방지도 등을 수시로 점검 •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유아교육 실시 •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를 시행

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1)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신고 및 유치원과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을 즉시 보고

2) 현장체험학습 전 유아와 인솔자에 대한 휴대전화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치원에서 관리한다.

3) 유치원 · 교사 ·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하면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4)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전화 보고하고, 사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 유치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생안전과

【☎ 주간 031-820-0790~3, FAX 821-1098, 야간 031-820-0514, 0524】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라. 사안 발생 시 주체별 역할 안내

유아 교사 및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119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기
인솔교사 **담임교사** 환자 상태 파악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상태가 중한 환자일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 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원장과 관리자 사고 경위 파악 사후 대책	⇨	·지역 및 도 교육청에 사고 경위 보고 ·환자 병문안 등 치료를 위한 지원 ·사후 대책 추진 시 학교 창구 일원화 유치원 → 교육 지원청 → 도교육청 (학생 안전과) → 교 육 부
행정사항	⇨	·진료 결과를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담임교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가 보상신청

15. 감염병 예방 안전대책

가. 유치원 감염성 질환 시 비상대책

단 계		상 황	주요 대응 내용
대 비		◦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전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 수립 및 감염병 예방 활동 시행 ▸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대응	1 단계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	◦ 원내 감염병 유증상자 1명 이상 확인	▸ 초기 응급처치 시행 ▸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처 ▸ 등원중지 안내 및 병원 진료 의뢰
	2단계 환자파악 및 유행 여부 판단	◦ 원내 감염병 확진 또는 의심 환자 1명 이상 발생	▸ 원내 감염병 유행 감시- 담임교사 : 학급별 환자 파악- 원감 : 학급별 환자 집계 분석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유행 여부 판단 ▸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3 단계 원내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확산방지	◦ 원내 감염병 유행 <유행 판단기준(예시)> ◦ 동일 학급 내 2명 이상 발생 ◦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 : 전체 인원의 5% 발생	▸ 원내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 환자파악팀(담임/부장) :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하여 보건교사에게 알림 ▸ 환자관리팀(건강 안전담당교사, 원감) : 유증상자 처치 및 진료 의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원아 및 학부모 보건교육 ▸ 행정지원팀(행정실장) : 방역, 예산지원, 역학조사 협조, 대내외 홍보 ▸ 학사관리팀(교무부장) : 상황판 작성, 수업결손 대책 수립, 등원중지 원아의 출결 사항 확인, 생활지도
	4 단계 상황 종료	◦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 ◦ 파악된 모든 접촉자가 최대 잠복기까지 의심 증상이 없음	▸ 원감, 건강 안전담당교사 : 기간별, 학년별 확진 환자 수, 처리 내용, 역학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감염병 발생 종료 보고

나. 감염병 발생 시 등원 중지조치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2)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 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원중지를 시키고 출석 인정 기안 후 출석부에 기록한다.

3) 확인 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다. 감염병 예방요령에 대해 예방 시, 증세발견 시, 증세 진행 시를 수시 지도

구 분	행 동 요 령
예방 시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비누 등으로 손씻기를 생활화함 •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임 • 창문과 출입문을 2~3시간 간격으로 자연 개방하여 환기함 • 물은 항상 끓여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음 • 눈병 유행 시 눈을 만지지 말고 수건, 비누 등 개인 물품을 사용
증세발견 시	• 발열, 두통, 설사, 수포, 눈 가려움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림
증세 진행 시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소매로 가리고 함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마스크를 착용 • 수건 등 위생용품을 따로 사용하고 수영장 등의 출입을 삼감 •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음

라. 유치원 감염병 예방 활동 연간계획

시기	주제	대상	방법
3월	법정 전염병 인플루엔자, 수두	유아/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4월	손 씻기	유아	교육자료(동영상)
5월	유행성이하선염	유아/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6월	유행성각결막염	유아/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7월	수두	유아/학부모	교육자료(동영상)
8월	손 씻기	유아	교육자료
9월	수족구병	유아/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10월	인플루엔자	유아/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11월	유행성각결막염	유아/학부모	교육자료(동영상)
12월	수두	유아/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2) 세부 추진계획

예방 교육 계획	유아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등) ◦ 나.침.반 안전교육을 통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 수시(등원 시, 활동 후 등)로 손 씻기 지도를 통한 감염병 예방 생활습관 형성 ◦ 마스크 착용 지도를 통한 감염병 예방
	교직원	◦ 스탠딩회의 시 교직원 감염병 예방 주의 ◦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이수 ◦ 손 세정제, 장난감 소독제 배부 후 사용법 숙지
	(조)부모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 e-알리미 등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 가정에서 발열 체크 후 등원 지도 안내 ◦ 유아들 마스크 착용 지도 안내
유치원 내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계획	◦ 방역 철저 ◦ 음용수 위생관리 강화 ◦ 손 소독제 사용 ◦ 등원 시 유아 손 씻기 지도 및 열 체크 ◦ 장난감 소독제 비치 및 유아 하원 후 수시로 소독 실시	
환자발생 대처방안	◦ 교직원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모니터링(유아, 교직원) ◦ 원 장 - 일일 현황 파악 보고(담당자) - 진료 후 감염병 확진 일시 등원 중지 - 휴업 결정 및 휴업 중 학년 별 가정 활동 안내 ◦ 각 반 담임 - 감염병(의심)환자 발생 시 마스크 착용 후 교무실로 이동 - 등원할 때(휴업 후) 진료확인서 확인 후 등원 조치 ◦ 원 감 - 감염병 환자 병원으로 이송 및 의료기관 진료 ◦ 교무 실무사 - (조)부모 연락 및 의료기관 진료 요청	
유치원 내 감염병 유입차단 계획	◦ 유치원 내 감염병 유입 대처 방안 안전 교육 실시 ◦ 발열 체크(37.5℃이상 즉시 격리) ◦ 방역 철저 ◦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 출입 시 손 소독제 사용	
기타	◦ 감염병 관리대장 준비 철저 ◦ 진단관련 물품 준비 철저 (체온계, 마스크 등)	

다. 유치원 및 가정의 역할

감염병 종류	유치원	가정
인플루엔자	◦ 담당 학급 유아 상시 관찰, 결석유아 파악 후 원감에게 보고 ◦ 마스크 착용 후 감염병(의심)환자 교육기획실로 이동 ◦ (조)부모 연락 및 의료기관 진료요청 (등원중지안내서, 진료확인서 배부) ◦ 진료결과를 원감, 원장에게 보고 ◦ 교실 환기 및 소독 실시 ◦ 등원중지 시 (조)부모에게 생활지도 방법과 필요한 행정조치 안내	◦ 등원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가까운 병원 진료 실시 ◦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후 4일정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 피하기 ◦ 의심 증상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하여 유치원 내 추가 전파 방지 ◦ 담임교사에게 진단 사실을 알림
수두	◦ 담당 학급 유아 상시 관찰, 결석유아 파악 후 원감에게 보고 ◦ 마스크 착용 후 감염병(의심)환자 교육기획실로 이동 ◦ (조)부모 연락 및 의료기관 진료요청 (관련 서식 배부), 일시적 관찰 실시 ◦ 교실 환기, 학생 위생수칙 예방교육 실시	◦ 등원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가까운 병원 진료 실시 ◦ 모든 피부병변의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환부 자극 피함 ◦ 담임교사에게 진단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또는 집에서 치료 실시 및 물품 별도 사용 ◦ 진료확인서에 기록된 격리기간 동안 등원 중지 및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함
유행성 이하선염	◦ 담당 학급 유아 상시 관찰, 결석유아 파악 후 원감에게 보고 ◦ 마스크 착용 후 감염병(의심)환자 교육기획실로 이동 ◦ (조)부모 연락 및 의료기관 진료요청 (관련서식 배부), 일시적 관찰 실시 ◦ 교실 환기, 학생 위생수칙 예방교육 실시	◦ 등원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가까운 병원 진료 실시 ◦ 전파 방지를 위해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필요 ◦ 담임교사에게 진단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실시 ◦ 진료확인서에 기록된 격리기간 동안 등원 중지 및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함

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계획(별도 세부계획 수립함)

16. 미세먼지 대응 세부 행동요령(세부 별도계획 수립함)

2022 산현유치원 미세먼지 대응 세부 행동요령(요약)

<table>
<tr><td>농도별
행동
요령</td><td>
사전대비·대응
<table>
<tr><th colspan="2">미세먼지</th><th colspan="2">초미세먼지</th></tr>
<tr><td>좋음</td><td>0~30</td><td>좋음</td><td>0~15</td></tr>
<tr><td>보통</td><td>31~80</td><td>보통</td><td>16~35</td></tr>
</table>
</td><td>
고농도 예보
(‘나쁨’이상)
<table>
<tr><th>미세먼지</th><th>초미세먼지</th></tr>
<tr><td>24시간
평균
81이상</td><td>24시간
평균
36이상</td></tr>
</table>
</td><td>
주의보
예비·비상저감조치
<table>
<tr><th>미세먼지</th><th>초미세먼지</th></tr>
<tr><td>시간당
평균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td><td>시간당
평균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td></tr>
</table>
</td><td>
경보
<table>
<tr><th>미세먼지</th><th>초미세먼지</th></tr>
<tr><td>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td><td>시간당
평균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td></tr>
</table>
</td></tr>
<tr><td>미세
먼지
대응
조직원</td><td colspan="4">
<table>
<tr><th>미세먼지 대응 실시</th><th>미세먼지 담당자 (정)</th><th>미세먼지 담당자 (부)</th></tr>
<tr><td>전체 교직원</td><td>박*선</td><td>김*경</td></tr>
</table>
</td></tr>
<tr><td>미세
먼지
담당자
주요
업무</td><td colspan="4">-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활용</td></tr>
<tr><td>행동
요령</td><td colspan="4">
1. 안전조치사항
- 학년 초 미세먼지와 유관한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유아 등 민감군 유아 현황 파악
- 등원시간대 실시간 미세먼지농도가‘나쁨’이상일 때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안정
-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고, 교실에 상비약(인공눈물, 위생용품, 보건용마스크 등)을 구비
- 기저질환이 있다고 파악된 유아에게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벤톨린, 얀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
※ 교육 주요내용 및 방법
■ 교육방법 : 교직원 - 계획에 의해 담당자가 대면교육
/ 유아 - 각 반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계기교육
■ 의사와 상의한 후 외출 시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자)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 (천식)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 악화 시 행동요령 숙지하고, 의사와 상의한 후 보건용 마스크 사용
- 기저질환 유아 중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에 비상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착용하도록 지도
- 유아 대상 구체적인 행동요령 교육 실시(담임교사)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td><td></td><td></td><td colspan="2">-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 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세척
하여 위생관리</td></tr>
<tr><td colspan="4">2.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전파요령
- 평소 교직원 및 학부모 비상연락망 현행화 유지 : 매일 아침 스탠딩 회의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공유
- 유치원의 대응조치 사항을 보호자에 sms문자 또는 e알리미를 통해 공지</td></tr>
<tr><td colspan="4">3. 바깥놀이,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점검 및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교실 및 강당 이용</td></tr>
<tr><td>대기오염 예방 방안</td><td>비상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사전 점검
(차량 2부제)</td><td></td><td colspan="2">-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조례에 의한 차량 운행 제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td></tr>
<tr><td>미세먼지 대비 학사 운영</td><td></td><td>▪ 민감군유아 건강 확인
- 실내수업 실시 (교실, 강당)</td><td>▪ 민감군유아 건강 수시 확인
- 실내수업 실시 (교실, 강당)
- 학사운영조정 검토</td><td>▪ 민감군유아 건강 수시 확인
- 실내수업 실시 (교실, 강당)
- 학사운영조정 적극 검토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td></tr>
<tr><td>조치 결과 보고</td><td></td><td></td><td></td><td>-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결과는 7일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td></tr>
<tr><td>실내 공기질 관리</td><td colspan="4">-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_{10} 100㎍/㎥, $PM_{2.5}$ 35㎍/㎥) 준수
■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교실 내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되,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 또는 복도창을 개방하여 환기실시
■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 등 주기적인 교체 및 내·외부 청소 등을 실시
■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보다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동 및 관리
■ 교직원의 경우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
■ 교실 및 복도 등의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 (가급적 미세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침시간 이용)</td></tr>
</table>

Ⅳ 대비활동

1. 재난대응 합동 훈련 계획

가. 재난대응훈련

1) 소방서 합동대피훈련 및 재난대피 훈련 : 연중 6회 이상 실시한다.

2) 재난대응훈련주간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한다.

나. 실제 상황을 가상한 맞춤형 대응 훈련 시행 및 대피로 확보

1) 재난 대응안전 한국훈련 기간 2회 이상 실제 훈련 시행한다.

2) 체험 위주 유아·현장 중심의 안전훈련 시행한다.

3) 재난 취약유아(유아·특수) 대피 및 훈련 강화한다.

4) 안전생활 습관화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 유아 참여 강화한다.

5) 주입식 훈련을 탈피, 체험 위주의 다양한 훈련 방법 적용한다

- 유치원 ↔ 교육지원청 ↔ 도 교육청 상황 보고 및 전파 훈련 강화
- 상황별 재난 단계별 교직원 상황판단 및 보고, 조치능력 강화
- 원장 중심의 교직원 상황판단 회의와 실제 훈련 병행 추진
-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한 협업 대응능력 강화

6) 비상 차량 이동 동선 점검 및 확보(불법 주정차, 시설·구조물 이동 등)한다.

7) 교실 등 실내의 복도, 계단 등 이동 통로에 상시 적치물 철거한다.

- 소방 법규나 지침에 위반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및 시설보강

2. 원내 화재대피훈련 계획

가. 훈련 목표

1)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현장훈련으로 대피 절차 및 행동요령을 익힌다.

2) 반복적인 대피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3) 다양한 상황에서의 화재대피훈련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능력을 기른다.

나. 훈련 방침

1) 화재 발생 상황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한다.

2) 유아들이 안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대처 훈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3) 화재대피훈련 전에 대피 장소, 대피방법,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을 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4) 훈련세부일정과 시나리오는 별도 계획수립 실시한다.

다. 재난 대피 훈련 조직 및 역할

※각종 재난대비 훈련대책반 조직도와 일원화 하여 운영함

구분	조직별 역할	사전준비물
상황반	• 유치원 내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유관기관 - 소방서(119), 교육청(031-488-2484), 연성지구 소방서(031-310-0523) 목감 치안센터 (031-487-0788)등	• 방송 장비, 사이렌, 방송시나리오, 사전교육 동영상
안내 유도반	• 각층 비상구(계단)와 대피소 등에서 유아 대피를 유도 메가폰, 호루라기, 손전등 등을 휴대(정전 대비) • 재난위험경보 발령 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유아들을 안전장소로 대피 유도 임무 수행 • 특수 유아 우선 대피 지원 • 각 층별 대피 유도 교사는 각 실별 원아 유무 확인 후 최종 대피 (교실, 화장실, 특별실 점검) • 사회복무요원은 학년별로 대피지원 및 교실에 남은 유아 확인 후 최종 대피(교실, 화장실, 특별실 점검)	• 유아 관리 -원아 명부, 양말 또는 덧신 • 대피 훈련 지원 -메가폰, 호루라기, 손전등 등 -안내를 위한 유도표시, 대피경로, 대피소 표시
응급 구조반	• 환자 발생 시 응급구호소에서 처치	• 응급의약품
소화반	•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 진압	• 대피 자세 유지 - 소화기

라. 훈련 안전지침

구분	내용
훈련 안전 지침	▪화재 발생 경보 사이렌과 방송이 나오면 모든 반에서 신속히 정렬시킨다. ▪층별 대피 순서에 따라 신속히 대피시킨다. - 대피 시 젖은 수건 ·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도록 한다. - 인솔교사는 맨 앞에 서서 유아들을 인솔하여 소란하지 않도록 조용히 대피시킨다. -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타지 않도록 하고 계단으로 대피시킨다. ▪대피한 학급 순서대로 대피 장소에 모인다. ▪지정된 대피 장소에 반별로 다 모인 후 반별의 대피 상황(피해자, 부상자 등)을 파악한다. - 전체 대피가 끝나면 대피 인원수와 상황을 보고한다.
교사 대처 방법	▪화재경보 장치가 작동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한다. ▪화재를 확인하면 즉시 소방서(119)로 신고한다. ▪유치원 및 유치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먼저 큰소리로 교직원 및 유아에게 알리고 상황을 보고한다. ▪교직원에 의해 초기 소화를 진행한다. -화재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경우는 소방차를 기다린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화재 장소에서 구해서 응급처치를 한다. ▪화재 장소와 규모, 풍향 등을 고려해서 피난 장소를 정한다.

3. 지진대피 훈련 계획

가. 훈련 목표

1) 지진 발생에 대비한 현장훈련으로 대피 절차 및 행동요령을 익힌다.
2) 지진 대피 훈련하여 재난에 대한 안전이식을 강화한다.
3)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상황별 비상 행동요령을 알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나. 훈련 방침

1) 지진 발생 상황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한다.
2) 유아들이 안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대처 훈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3) 대피 장소, 대피방법, 대피경로, 이동 시 안전교육 등을 사전에 교육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다. 훈련 안전지침

구분	내용
훈련 안전 지침	▪지진 발생 경보 사이렌과 방송이 나오면 교실 내 안전 공간으로 대피한다. - 유아는 책상(혹은 생명의 삼각형 공간) 아래 들어가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다리를 붙잡고 안내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한다. ▪대피 안내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정렬한다. ▪층별 대피 순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 파편 잔해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하도록 한다. ▪대피한 학급 순서대로 운동장(대피 장소)의 약속된 장소에 반별로 선다. ▪지정된 대피 장소에 반별로 다 모인 후 반별의 대피상황(대피자, 부상자)을 파악한다. - 전체 대피 종료가 확인되면 대피 인원수와 상황을 보고한다.

구분	내용
교사 대처 방법	▪지진 발생 경보 사이렌이 나오면 교사는 전원과 가스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지진 발생 시 책상 밑으로 숨고 의자를 단단히 잡는 것을 평소에 훈련시킨다. ▪실외운동장에서는 낙하물을 피하고자 건물에서 떨어져 운동장의 중앙으로 피난시킨다. ▪이차적으로 일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조리실 등 화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교무실에 있는 교직원은 긴급방송을 한다. -상황에 따라 유아의 안전 확보, 피난경로 확보, 화재의 초기 소화한다. ▪유치원이 토사 재해 등의 위험지역에 있는 경우는 유아를 다른 피난 장소로 대피시킨다.

라. 훈련대책반 임무

구분	조직별 역할	사전준비물
상황반	• 유치원 내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유관기관 - 소방서(119), 교육청(031-488-2484), 연성지구 소방서(031-310-0523) 목감 치안센터 (031-487-0788)등	• 방송 장비, 사이렌, 방송시나리오, 사전교육 동영상
안내 유도반	• 각층 비상구(계단)와 대피소 등에서 유아 대피를 유도 메가폰, 호루라기, 손전등 등을 휴대(정전 대비) • 재난위험경보 발령 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유아들을 안전 장소로 대피 유도 임무 수행 • 특수 유아 우선 대피 지원 • 각 층별 대피 유도 교사는 각 실별 원아 유무 확인 후 최종 대피 (교실, 화장실, 특별실 점검) • 사회복무요원은 학년별로 대피지원 및 교실에 남은 유아 확인 후 최종 대피(교실, 화장실, 특별실 점검)	• 유아 관리 –원아 명부, 가방 또는 방석 • 대피 훈련 지원 -메가폰, 호루라기, 손전등 등 -안내를 위한 유도표시, 대피경로, 대피소 표시
응급 구조반	• 환자 발생 시 응급구호소에서 처치	• 응급의약품
소화반	•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 진압	• 대피 자세 유지 – 소화기

4. 비상 배낭의 마련과 관리

가. 목적

재난 및 응급상황 시 구호 및 생존을 위한 용품보관.

나. 운용방침

1) 보관처: 행정실 1팩

2) 비상배낭 구성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유아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건전지, 지압붕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 성냥, 양초, 라디오, 방한담요, 방진마스크, 약품, 다용도나이프, 건조식량

다. 운용방법: 분기별 내용물 점검 · 보완, 보완 · 관리 철저

V 대응절차와 행동 수칙

1. 의료사고유형별 행동 수칙

가. 절차

	지도내용
발생 즉시	• 원장과 구조대 및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 요청 •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시 1339, 119에 신고하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급대가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이 때 교사 중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가 하는 것이 원칙(의식유무 확인, 맥박 호흡, 피부색깔, 출혈유무, 동공크기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자세를 유지시키고 보온과 필요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 등을 실시) • 병원으로 후송할 때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함께 동행 • 사고 발생 시 교사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
발생후	• 교통사고 시 외상이 없는 유아들은 일단 병원에서 안정 치료를 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의 허락 하에 치료 상담으로 추후 관리 • 모든 인솔 및 지도교사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사로서의 의무를 이행 • 원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교육청(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 발생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

나. 골절

1. 안정	2. 압박 · 고정	3. 거상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시킨다.	롤붕대를 압박하여 감아주거나, 부목을 이용하여 골절부위를 고정시킨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부종을 막는다.

다. 화상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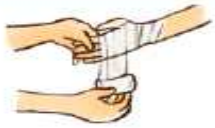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긴다.	화상부위를 빨리 찬물에 20분 이상 담가둔다.	화상 부위에 깨끗한 거즈를 대고 붕대로 감아준다. 단,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라. 유아가 숨을 쉬지 않을 때 (심폐소생술)

1	**환자의 반응 확인 및 119 신고**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소리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며 반응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2	**가슴 압박** 압박 위치에 한 손을 얹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겹쳐 올린다. 분당 100~120회의 규칙적인 속도와 5~6cm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3	**기도 유지** 한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다른 손으로 턱 끝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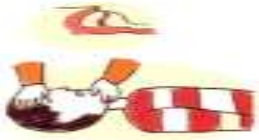
4	**인공호흡** 환자의 코를 잡아서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숨을 불어 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한다.	

마. 코피 및 눈에 들어간 이물질

	지도내용
코피	•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방울을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10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한다. • 코뼈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 입으로 호흡하게 하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뱉어 내도록 한다. • 타박상으로 인한 경우, 30분 이상 지혈되지 않으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한다.
눈에 들어간 이물질	<눈에 들어간 이물질> ·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얼굴을 물에 잠기게 하여 물속에서 눈뜨기를 반복하고, 이때 눈을 손으로 문지르면 안 된다. ·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당기며 젖혀서 눈꺼풀 안쪽에 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묻힌 면봉을 사용하여 빼낸다. · 아래 눈꺼풀이나 눈 앞쪽에 이물질이 보이면 몸을 옆으로 하여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낸다. ·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위 눈꺼풀을 위로 잡아당긴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 이런 방법으로도 이물이 눈 안에 있다고 계속 느껴지면 위 눈꺼풀을 뒤집어 부드러운 면봉으로 위 눈꺼풀의 안쪽을 닦아낸다. <알갱이의 경우> · 즉시 반드시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눈을 최소한 15분 정도는 씻어야 한다. · 주변에 수도꼭지가 없으면 병에 든 생수를 사용한다. · 화학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세척 후 바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한다. · 119에 연락하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2. 재난 발생 시 행동 수칙

가. 황사

상황/단계 (소방방재청 기준)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황사발생 전 (황사예보 시)	• 기상예보 수시파악,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유아비상연락망 및 관계기관(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과의 연락체계를 점검·확인한다. • 휴업 조치 시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유치원에서의 자율학습 대책을 수립한다. •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대비행동요령 교육·홍보한다.
황사발생 중 (황사주의보/ 경보 시)	• 비상 연락망을 가동한다. • 보건위생교육 철저 : 야외에서의 방진 마스크 착용 조치 등 •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고려한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야외활동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 황사관련 질환자를 파악하여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등)한다. • 유치원급식 및 식수관련 위생관리 점검 등을 강화한다.
황사종료 후	• 실내·외(급식소)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 유아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한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거나 식당 등에 소독을 한다.

나. 지진

1) 지진대비 행동요령

상황/단계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지진오기 전 지진대비대칙	•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하고, 건물이나 담장 등을 수리한다. • 비상시를 대비해 약품, 비품, 식품 준비 및 위치와 사용법, 응급처치법을 파악하고 지진 후 통신이 끊어 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둔다. •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공터, 공원, 유치원 등)도 미리 알아둔다.(좁은 길, 담 근처로 피하지 않아야 한다.) • 불을 사용하는 주변에 소화기를 준비한다. •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한다.
지진피해 후 대처요령	• 지진으로 취약해진 건물이 여진으로 위험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유리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신는다. • 주택안전에 의심이 간다면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 • 건물 내에 쏟아진 약품, 표백제,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종류·처리방법을 모를 때에는 그대로 두고 대피한다. • 가스 새는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되, 가능하면 메인밸브를 잠그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 전기적인 이상이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수도관에 피해를 보았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근다. • 하수관로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 인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용을 자제한다. • 부상자 구조요청은 즉시, 의식이 없는 경우 물을 주지 않는다. • 거리로 될 수 있으면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면, 지진에 의한 피해(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축대·교량·도로 등)에 주의한다. •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듣는다.

2) 지진 발생 대비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상황/단계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지진발생 전	• 유아비상연락망, 관계기관(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과의 연락체계를 점검·확인 및 유치원별 지진대피계획 마련 • 유아를 대상으로 지진대피 연습 실시 ▸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모든 구성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치원 내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알리도록 한다.
지진발생	•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요령에 의거하여 유아 긴급 대피 등 응급조치 ▸ 1차 지진 발생 시(상황반/경보접수, 전파) : 유아들이 자신의 책상 밑으로 재빨리 들어가 머리를 보호, 출입문 확보, 전원차단 ▸ 1차 지진 종료~여진 발생 전(대응조직반 가동/ 안내유도, 응급구조) :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유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피난경로를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넓은 운동장). 순차적 대피, 침착, 질서유지, 환자·장애우 대피 우선 지원 ※대피장소로 이동 중에는 항상 책가방·책 등으로 머리를 감싸서 낙하물로부터 보호 ※층별 안내교사는 유아 대피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장소로 이동 ※응급구조반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활동 실시 ▸ 대피장소 도착 시 유아인원파악 및 라디오 청취
지진종료 후	•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 상황 파악 및 교육청 보고 • 지진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 피해 복구 및 응급 수업대책 수립 ▸ 지진 발생 시 기관장이 판단하여 유아들의 조기귀가, 임시휴업 및 휴원조치 ▸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장이 판단하여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대책 수립 조치 ▸ 기관장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다. 낙뢰

상황/단계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일반적 행동요령	▪낙뢰 발생 시 가급적 외출을 금지한다. ▪교실 내 창문을 닫고 전기 콘센트를 뽑고, 물이 있는 세면대 및 싱크대에서도 떨어져 있는다. ▪귀가 지도 시 낙뢰가 발생하면 학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안전해진 후에 귀가토록 한다. ▪원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낙뢰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한다.
야외 행동요령	▪실외 활동 시 사전에 기상예보를 확인한다. ▪실외 활동 및 체험 활동 중일 경우 미리 이동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대피 장소를 확인한다. ▪낙뢰 시 나무 주변은 특히 위험하며 나뭇가지나 줄기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거리가 안전하다. ▪전봇대, 금속 울타리, 철탑, 가로등 기타 금속이나 도전성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부득이하게 운집한 경우 서로 접촉하지 말고 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대피할 장소가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주위보다 낮은 지점에서 웅크리고 앉는 자세로 대피한다. ▪낙뢰 발생 시 우산은 쓰지 않는다. ▪자동차로 이동 시 낙뢰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모두 닫고 안전한 속도로 이동한다.
낙뢰 피해자 발생시 행동요령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피해자 이름을 불러 의식의 유무를 살핀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한다. ▪호흡이 멎어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이 정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과 병행해서 심장 마사지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한 후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다.

라. 폭염

1) 폭염관련 증상이 의심될 경우 대처요령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1	시원한 장소(통풍이 잘되는 그늘,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 등)로 옮긴다.
2	옷을 벗기고 몸을 차게 식힌다. · 옷을 벗긴다. ·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차게 식힌다. · 얼음주머니가 있을 경우 이마, 목, 겨드랑이, 가랑이 등에 대어 몸을 식힌다.
3	수분, 염분을 섭취하게 한다. ·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 ▸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스포츠 드링크)를 먹인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식염수/물1ℓ에 소금 1~2g)을 섭취하게 한다. ▸ 필요시 119에 연락한다. ·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19에 연락을 한다. ▸ 불렀을 때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이상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토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며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4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다.

2) 폭염 발생 시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상황/단계	행동요령
공통	• 유치원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한다. • 유아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폭염에 취약한 질병보유 유아를 특별 관리한다. ※ 취약질환 : 심뇌혈관질환(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과체중자 • 폭염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등하원 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유아와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폭염 주의보 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 ▸ 원내 및 관계기관(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연락망 가동 • 폭염대비 유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실외·야외활동을 자제시킨다. • 자연체험활동이나 체육활동 실외수업은 그늘이나 강당에서 실시한다.
폭염 경보 시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실외·야외활동을 금지시킨다. • 실외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

마. 태풍, 집중호우

상황/단계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태풍, 집중호우 주의보	• 유치원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한다. • 재난 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집중호우 예보, 경보를 확인한다. • 지역 내 저지대(지하도) 및 상습 침수 구역의 위치를 교육한다. • 태풍, 집중호우 대비 유아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 유치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을 편성 및 운영한다. • 침수·단전 등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유치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한다.(접근금지 표시, 배수로 청소, 옥상 배수관 점검 등)
태풍, 집중호우 경보	• 필요 시 등하원 시간 조정, 휴업 등의 학사 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한다. • 태풍 집중호우 대비 유아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 유아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 토석류 붕괴, 산사태 등 유치원 내 위험지역 접근을 막는다. • 등하원 시 위험상황(침수, 통학로 소실) 등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 조치를 실시한다. •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기타	• 태풍, 집중호우 관련 기상 예보를 토대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등하원 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교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아와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바. 대설, 한파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일반적 행동요령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 상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 눈피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서행 운전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한다. ▪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한다.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 및 받침대 보강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고립 시 휴대전화 등을 이용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 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대설 주의보 **(24시간 신적설 5㎝ 이상 예상 될 때)**	▪ 대설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등원·귀가 시간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유아와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재난 방송을 통하여 대설 예보·경보를 청취한다. ▪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 대설 대비 유아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 제설 장비, 인력, 자재(염화칼슘, 모래, 소금)를 점검한다. ▪ 유치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 점검반을 편성·운용한다. ▪ 유치원 내 위험지역(붕괴, 눈사태 등)을 지정하고 표시한다.
대설 경보 **(24시간 신적설 20㎝ 이상, 산지는 신적설 30㎝ 이상 예상될 때)**	▪ 필요 시 등원, 귀가 시간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한다. ▪ 대설 대비 유아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 유치원 입구, 출입구, 계단 등에 제설 작업(염화칼슘, 모래 등 살포)을 한다. ▪ 등원, 귀가 시 위험 상황(통학로 소실, 교통 두절 등)을 확인하고 대응 조치(교육, 학부모 연락, 이동 안전조치)를 한다. ▪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사. 폭발사고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교실, 조리실, 특별실 등 각종 가전제품 및 보일러 등의 가스시설이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은 정기적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냄새가 날 경우, 유아 또는 교직원 누구나 상호 알림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는, 즉시 환기를 하고, 전기 스위치나 화기 사용을 금지하며, 즉각 가스판매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또는 119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도록 한다. ▪ 유치원의 체육창고, 작업 창고, 문서실, 자료실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밀폐공간에서는 집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축전지는 장시간 또는 고온의 장소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금속물질과 함께 보관하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 휴대용 부탄가스, 각종 생활용 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배출한 후 분리 배출한다.
폭발사고 발생시 중앙통제	▪ 폭발 징후 (가스 냄새 등)의 발견 즉시 또는 1차 부분 폭발 즉시, 경보수단(방송, 타종, 사이렌, 육성 등)을 이용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유아 대피를 지시한다. ▪ 유아 대피 시 준비된 비상시 대응조직(상황반, 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소화반)을 가동하고 감독한다. ▪ 가스판매소·지역관리소 또는 119에 신고한다. ▪ 선 안전대피 조치 후, 학부모 및 상급기관 등에 보고하여 사후조치를 한다.
학급통제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한다. ▪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히 유치원 밖으로 멀리, 차폐 벽이 있는 등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폭발사고 때는 굉음으로 청각 장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귀를 막고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호흡기관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풍향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고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한다. ▪ 운동장 활동 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 중앙통제에 따른다.

아. 붕괴사고

	유치원/교사 행동요령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정기적으로 건물 붕괴 징조의 유무를 점검하도록 한다. - 건물의 바닥, 벽 등의 균열 및 함몰 등의 정기적 관찰 ▪ 건물 붕괴 징조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유아 또는 교직원 누구나 상호 알림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유사시를 대비하여,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지정 장소에 보관해 두고, 활용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교직원에게 실시한다.
붕괴사고 발생시 중앙통제	▪ 붕괴 징후(각종 균열, 흔들림 등)의 발견 즉시 또는 1차 부분 붕괴 즉시, 경보수단(방송, 타종, 사이렌, 육성 등)을 이용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유아 대피를 지시한다. ▪유아 대피 시 준비된 비상시 대응조직(상황반, 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소화반)을 가동하고 감독한다. ▪ 가스판매소·지역관리소 또는 119에 신고한다. ▪ 선 안전대피 조치 후, 학부모 및 상급기관 등에 보고하여 사후조치 한다.
붕괴사고 발생시 학급통제	▪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를 한다. ▪ 대피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때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한다. ▪ 유리 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가방, 책, 방석, 담요, 신문, 상자(박스)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대피한다. ▪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중앙통제 지시에 따른다. ▪ 만약 잔해에 갇히게 되는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야 한다. ▪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이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 벽·파이프 등 두드릴 수 있는 사물로 규칙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낸다. ▪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체온 유지에 힘쓴다. ▪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시간만 켜서 배터리를 절약한다.

Ⅵ 복구 활동

1. 재난 발생 시 심리적 치료 체계 구축

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방법

1) 사고 발생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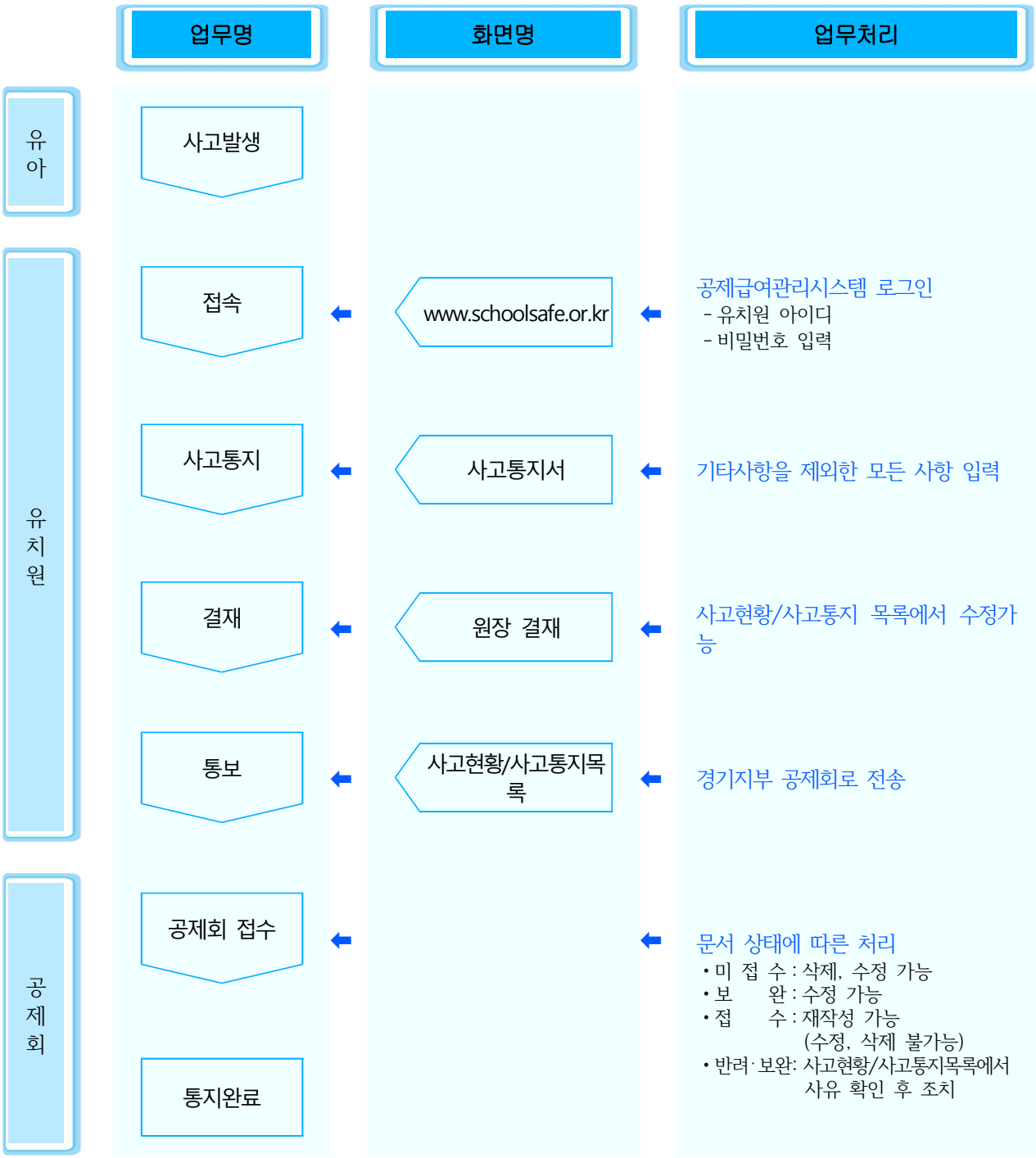

나. 급여 청구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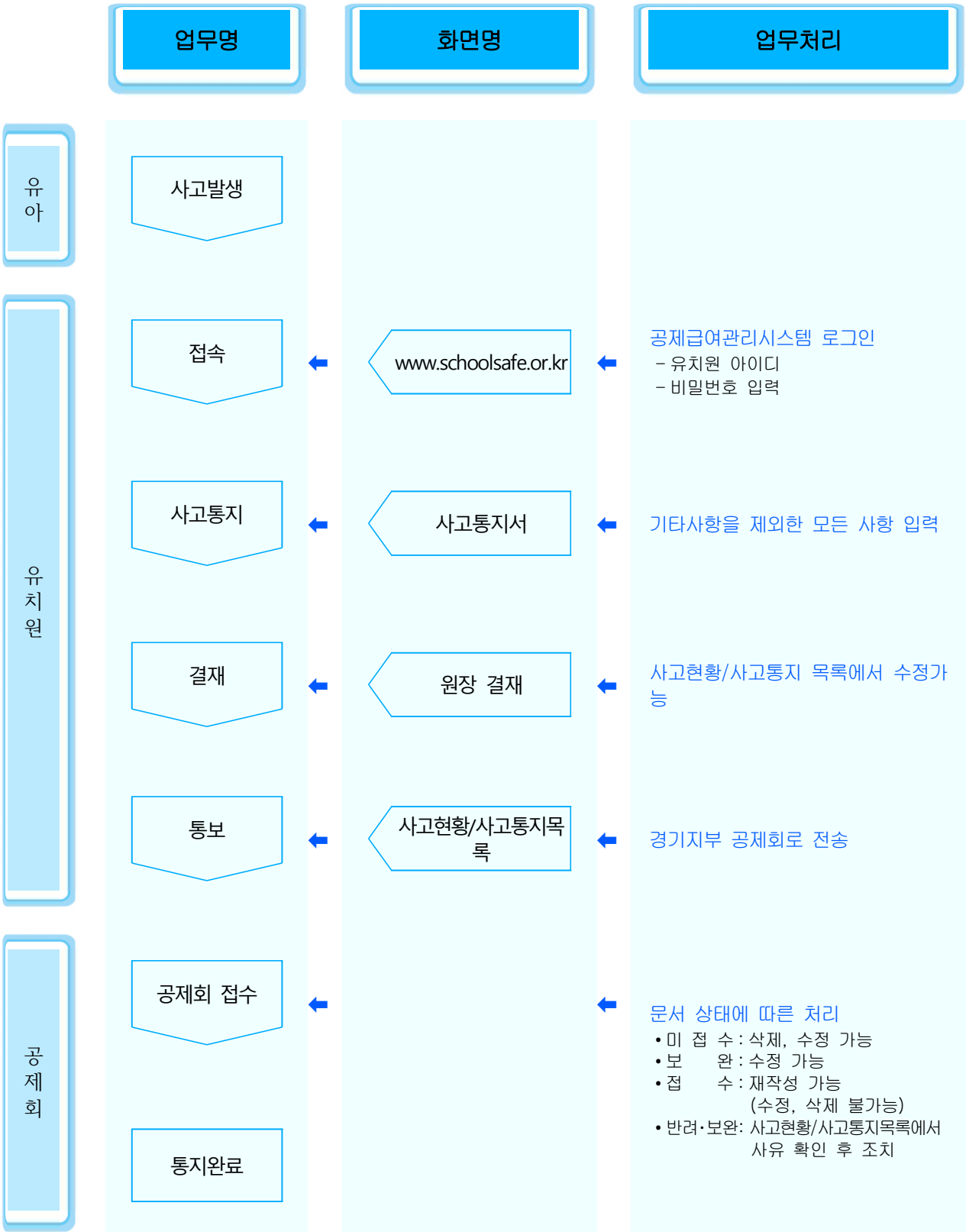
업무명
화면명
업무처리
유아
유치원
공제회
사고발생
접속
www.schoolsafe.or.kr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유치원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사고통지
사고통지서
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입력
결재
원장 결재
사고현황/사고통지 목록에서 수정가능
통보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경기지부 공제회로 전송
공제회 접수
문서 상태에 따른 처리
• 미 접 수 : 삭제, 수정 가능
• 보 완 : 수정 가능
• 접 수 : 재작성 가능
(수정, 삭제 불가능)
• 반려·보완: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에서 사유 확인 후 조치
통지완료

부 록

1.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 . .

점검(교육)자	회사명	담당자	유치원명	교사	학부모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2.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예시)

■ 수　　신 :
■ 발　　신 :
■ 보고 일시 : 20 . . .
■ 기본 사항

유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안명		사안 발생일시	
사고 교사 및 학생	<사고 학생 수가 많으면 별도 자료 첨부>		

※ 발생 즉시 전화 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송부

■ 사안 개요

▪ 사안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
▪ 언론 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3. 안전사고 발생 시 사안 대응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확인시간	확인자	비고
▢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 조치 (2차사고 예방)**			
▢ **상황 보고** - 학교장 보고 - 상급기관 보고			
▢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 설치와 기록자 2인 지정) - 팀 구성 및 역할 분배 - 팀별 사안 처리 및 진행 상황 확인			
▢ **언론 대응 (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 **현장대응팀장** - 현장대응팀 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 **피해 유아 보호자 연락**			
▢ **사고 관련 정보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 관련 자료			

4. 안전전점검표

< 월 교실 안전 예방 점검표 >

점검실명: 날짜: 2022년 월 일 점검책임자 :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 X=「결함/이상있음」 △=「보통/관리자확인필요」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1.1. 바닥				
1.1.1.	교실 바닥의 안전상태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및 노후화, 보행 장애물 상태여부)			
1.2. 벽				
1.2.1.	벽체 안전상태 (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1.2.2.	벽체 부착물 안전상태 (칠판, 선풍기 등의 고정 상태여부)			
1.2.3.	콘센트 안전상태 (먼지, 탄 자국, 고정 불량, 문어발식 사용 상태여부)			
1.3. 출입문				
1.3.1.	출입문의 안전상태 (레일, 손 끼임 방지, 부착물 등 상태여부)			
1.4. 창호				
1.4.1.	창호 안전상태 (유리, 보호시설(추락방지용)의 고정 등 상태여부)			
1.4.2.	창호 개폐상태 (레일, 창틀의 손상여부)			
1.5. 복도				
1.5.1.	복도의 안전상태 (피난관련시설 등 상태여부)			
1.6. 천장				
1.6.1.	천장 마감재 안전상태 (처짐, 파손, 누수 흔적 등 상태여부)			
1.6.2.	천장 부착물 안전상태 (전등, 선풍기, 냉방설비, 빔 프로젝트 고정 상태여부)			
1.7. 기타				
1.7.1.	소화 및 가스설비 안전상태 (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및 전문 점검 결과)			
1.7.2.	교구장, 책상, 의자 안전상태 (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점검 후 불량인 경우 유아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 서둘러 행정실로 개선 요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48안 2022학년도 유치원 안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49안 2022학년도 교권보호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바람직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성 계획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2조의2, 제6조 및 제7조 및「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12조(교권보호에 대한 지원)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2명, 교원위원2명, 경찰 1명 총 5명으로 구성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2022학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예정
   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운영규정 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권 보호 계획

산현유치원

Ⅰ. 추진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및 주요 사항 안내

Ⅱ. 추진목적

-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유치원문화 조성
- 교권침해 사안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의 안전망 구축
- 교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한 원활한 교육활동 및 행복한 유치원생활 지원

Ⅲ. 운영방침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우리 유치원 차원의 교권보호 및 교원의 안전망 계획 수립

나.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상담, 법률자문 지원 요청

라. 교원의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치유 연수 프로그램 지원 요청

Ⅳ. 추진계획

가.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교권침해 사안 해결 방안 심의 및 지원

나.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유치원, 법원, 경찰, 검찰,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다. **교권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 강화**

-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 강화
- 교원 대상 교권보호 연수 강화

라. **유치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유치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마.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 교권침해 예방교육 및 침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강화

Ⅴ. 기대효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교원의 정서적 치유와 성장 지원
- 교권침해 발생 시 유치원 자체 및 교육지원청 인·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주체 상호간의 존중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신뢰 구축으로 행복한 유치원 실현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운영

1 개념 및 법적지위

1.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2. 법적지위 : 기존의 유치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기구**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유치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2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2. 위원 선출 : 유치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교원위원이 1/2을 초과할 수 없음)

3. 선출 방법 :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유치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3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회의운영

1. 회의 소집
   -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2. 회의 준비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사안조사서, 관련자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 등)
   - 대기 장소 준비(피해, 가해 측 대기 장소를 분리해서 준비)

5 교권 침해 처리 절차

1. 유아에 의한 교권침해 처리 절차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원장/교권보호업무담당자) ▪주변 교원, 담당교원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 - 침해행위자 진정 조치 -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유치원 원장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주변 교원 또는 담당교원에게 도움 요청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유치원 원장의 피해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교원) - (침해)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 · 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사실확인서 작성 ▪피해 증거 제출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의결 /분쟁조정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 의결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과를 당사자, 유치원장에 서면통보 - 관할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유치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조치(처분) 통지 및 불복절차 안내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 이행 ▪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심리적 회복 지원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처리 절차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원장/교권보호업무담당자) ▪주변 교원, 담당교원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과 분리 조치 - 침해행위자 진정 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유치원 원장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주변 교원 또는 담당교원에게 도움 요청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유치원 원장의 피해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교원)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 · 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 ▪피해 증거 제출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유치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분쟁 조정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 · 보호자 등의 진술 기회 부여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 유치원장에 서면 통보 - 관할청에 심의 결과 보고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사후 처리	▪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요청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유치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다만, 원장, 원감 및 동료교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6 교원 치유 지원시스템

1. 교원치유센터 운영 안내

1) 설치장소 :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2)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3) 서비스 대상 : 경기도 교원

4) 기능

-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상담
- 교권보호 One-Stop Service(상담, 조사, 치료·법률 지원)
- 교권보호에 대한 유치원 컨설팅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 기타 교권보호 관련 사항 전담

5)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관련기관 및 담당
상담 치료 지원	- 사안 발생 즉시 상담 및 현장 조사 - 사안 유형에 따른 최적 상담 지원 - 치료지원 및 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 심리치료 등 치료비 지원 안내	-상담전문가 -전담변호사 -유치원안전공제회 -상담, 치료기관(58개 지정기관)
법률 지원	- 교권 침해 사안별 법률 상담 - 현행 교권 관련 법률 안내 서비스 - 변호사 선임, 소송대행, 소송비 지원 등 안내	-전담 변호사 -복지법무담당관실 -소송심의위원회
교권침해 예방지원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 교권침해 현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교권보호지원단 -상담전문가,

6)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7) 사안접수 및 상담

-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상담 등
-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 일반상담 : 031-820-0716, 0717
- 심리치료(상담), 힐링프로그램 등 : 교권전담 상담사(031-820-0718)
- 자해, 자살, 분노조절 장애 등 고위험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031-820-0714)
- 법률상담 : 교권전담변호사(031-820-0719)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현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교원지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유치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해당 유치원 학생의 학부모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마. 해당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 된 국가경찰공무원

바. 그 밖에 유치원 이하 각급 유치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

1. 유치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마.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 해당 유치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소속 유치원을 달리하게 된 때

나.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유치원을 졸업, 전학 또는 퇴학(자퇴 포함)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위원장)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당사자 출석)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치원장은 7일이내에서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연기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1.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유치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한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유치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분쟁조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11조(분쟁조정의 성립 및 결과 처리)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분쟁조정이 성립한다.
2.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가.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나. 당사자의 의견
   다. 조정의 결과
3.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유치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1.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제(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49안 2022학년도 교권보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0안 2022학년도 아동학대예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계획에 관한 심의
2. 주요내용
   가. 목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련법령
      1)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아동복지법」제3조 제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성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 계획

산현유치원

1. 근 거

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나.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 목 적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3. 세부 운영 내용

대상	내용	방법	횟수
교직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발생시 대응 계획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 및 교직원교육	연간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또는 시청각(인터넷)교육	연1회 1시간이상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작성	아동학대 의심 유아 발생시 체크리스트<**붙임 1**> 점검	수시
	- 무단결석 유아 관리	무단 결석 유아 관리 절차에 따름 (해당 유아 담임교사)	수시
	- 아동권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 2**>	연 2회
학부모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또는 대면교육 체크리스트 제공 <**붙임2**>	연1회
유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집합 또는 시청각교육	연1회

4. 무단 결석(미인정 결석) 유아 관리

결석 상황	대처방법	세부 내용
1일 (결석 당일)	1. 결석 사유 확인 2. 관리자 보고	1-1 결석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 후 출석 독려(담임교사는 통화내용 기록) 1-2 유선 연락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확인 2-1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자(원장, 원감)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2-2 경찰협조 요청시 관리자는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보고 (*2020 경기도 교육청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름)
2 ~ 5일 결석 (결석아동과 통화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3. 가정방문 실시	3-1 **2일이상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3-2 아동학대 의심시 112 신고 3-3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 방문시에는 학교 교직원, 주민센터등의 사회복지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방문 - 필요시 경찰관에 동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은 유선(182)로 가능 - 경찰동행하에 가정방문을 한 경우라도 아동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공문(경찰수사 의뢰서)발송이 필요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가능
6일	4. 결석아동 내원 (면담) 요청	4-1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과 함께 내원(면담) 요청 4-2 내원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 직접 전달이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7~9일	5. 결석 아동 및 보호자 내원(면담) 6. 교육장에게 보고	5-1 면담과정에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확인 5-2 내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5-2 내원 면담시 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경찰에 협조 요청 5-3 경찰청 수사협조 요청(수사의뢰)은 반드시 공문으로 발송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 후 추후 공문발송 6-1 수사 의뢰사항, 의뢰 결과, 결석 아동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6-2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대장**<붙임3>**보고

5. 아동학대(의심) 발생시 대처

가. 단계별 대응절차

대응절차	유치원의 역할
평상시	· 매일 유아의 건강과 안전 확인 (옷 차림, 표정, 태도, 몸의 상처등) · 보호자 동의서(미인정결석시 가정방문)을 사전에 받아두기 **<붙임4>**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징후 발견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붙임1>**를 활용하여 신고여부 판단
응급 상황시	·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 분리 · 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 신고
아동학대 신고	· 신고 후 학대 증거 확보 및 신고내용 비밀 엄수
현장 조사	· 아동 조사시 유치원 내 독립된 장소 제공 협조 · 피해아동에 관한 관련자료 제공 등 조사 협조
조치 결정	·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비밀 보장 ·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함 ·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소적 관찰을 통해 상태 확인 · 다른 아동 및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사후 관리	· 피해 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엄수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스러운 상황 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지원
치료 및 상담지원	·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연결

나. 아동학대 조기 발견 통로

관찰	상담	지속적 관심
·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 살피기 · 평상시와 다른 상흔 또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비 위생적인 신체 상태 확인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에 대해 꼼꼼히 기록	· 아동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상담하고 상담내용 기록 **<붙임5>** ·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문의 후 상담의뢰 (김포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업무연락처 : 031-980-****) · 건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건교사에게 상담의뢰 · 아동과의 상담내용 기록	· 친구나 이웃등의 제보에 대해 관심 갖기 · 주변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록하기

6. 퇴원아동에 대한 관리 · 대응

가. 아동학대 의심 원아의 퇴원시 대응

명확한 사유없이 퇴원 신청을 할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기관(112)에 신고한다.

나. 관리·대응 매뉴얼

유형	학부모가 할 일	유치원에서 할 일
명확한 사유로 퇴원 신청시 (이사, 기관이동, 질병등)	· 명확한 사유가 포함된 자퇴신청서를 유치원으로 제출	· 자퇴 신청서 접수 및 퇴원처리
명확한 사유없이 자퇴신청시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을 동반하여 자퇴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아동 동반하에 유치원에 직접 내원하여 자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권유	· 아동 동반을 요청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으로 아동과 통화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 · 아동학대 의심시 112 신고 ** 아동학대를 의심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담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0 2022학년도 아동학대예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1안 2022학년도 인성교육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유치원 인성교육 계획에 관한 심의
2. 주요내용

가. 목적

유아기부터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

나. 방침

1) 놀이주제와 연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시
2) 유아의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와 관련된 실천중심, 경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유치원의 하루 일과 속에서 지도
3)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과 유치원의 소통 강화

다. 세부 추진 계획

1)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더불어 사는 역량을 강화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2)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
3)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된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

1 인성교육계획서

가 목적

1)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도모한다.
2)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심성 계발을 위한 인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3)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능력을 기른다.

나 방침

1)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2) 모든 교육 활동 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3) 유아, 교사, 학부모, 마을 공동체를 어우르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4) 월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기본생활습관을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5) 인성교육 운영을 위해 연간 1시간 이상 교사연수를 의무 이수하여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

다 추진계획

1) 세부 추진 계획

구분	내용	추진내용	대상	시기
인성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	• 월별 인성 덕목을 선정하고 기본생활습관 주제와 연계하여 인성교육 실시 • 월별 인성덕목과 관련 교육활동 전개 • (인성동화, 인성 게임 등)	전체유아	연중
	기본생활습관교육	• 일상 생활 속 월별 인성덕목과 연계한 기본생활습관 교육	전체유아	연중
	전래놀이	• 인성덕목 실천 전래놀이	전체유아	
	가정과 연계	• 월별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인성덕목 부모교육 실시 • '부모님, 사랑해요' 효 실천 활동	가정통신문	월1회
	지역사회와 연계	• 지역사회 협력 전통예절교육 '책례, 다도' • 마을체험 및 현장체험학습	전체유아	연중
	교원역량강화	• 교사 연수 1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 이수	전체교사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교육	• 우리반 약속정하고 실천하기 • 아동권리교육 • 토의·토론 시간, 캠페인 활동	전체유아	연중
	평화·인권 교육	• 교실 내 생활지도 및 문제 상황에 대한 토의 •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교육	전체유아	연중
	다문화·장애이해 교육	• 다른 나라 놀이 체험 • 특수교사와 함께하는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이해 주간 운영	전체유아	연중

2) 인성덕목과 기본생활습관교육을 연계한 계획안

시기	인성 덕목	기본생활습관 내용	교육과정 연계
3월	질서	인사를 해요 식사 전 손을 씻어요	우리반 규칙 만들기, 차례 차례 줄을 서요
4월	질서	약속을 지켜요	약속판 만들기
5월	효	부모님께 '사랑해요' 말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6월	존중	서로 다름을 존중해요	아동권리교육(안전교육과 연계)
7월	협력	함께 도와가며 생활해요	도우미 활동하기
9월	협력	동생을 아껴줘요	의형제활동 -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줘요
10월	배려	친구에게 양보해요.	장애인 공감교육
11월	협력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의형제 활동(협동게임)- 힘을 합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12월	나눔	물건을 아껴쓰고 나눠 써요	물건 물려주기

3) 얼쑤! 전래놀이

(1) 목적: 전래 놀이를 통해, 친구를 배려하며 바른 인성을 기른다.

(2) 활동내용

시기	주제	교육내용	자료
4월	산가지 놀이	• 산가지를 던진 뒤 산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겹쳐진 산가지를 하나씩 떼는 놀이	나뭇가지
5월	실뜨기	• 실의 두 끝을 맞매어서 양쪽 손가락에 얽어 두사람이 주고 받으며 꼴을 만드는 놀이	실
6월	딱지치기	• 딱지 한 장을 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히면 따먹는 놀이	딱지
9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한 명이 술래가 되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술래를 잡는 놀이	
10월	우리집에 왜왔니?	• 우리집에 왜왔니? 노래를 부르며 하는 놀이	
11월	제기차기	• 제기를 차면서 노는 놀이	제기

4) 신나는 전래동요

(1) 목적: 전래 동요와 전래놀이를 함께하면서 친구를 배려하는 바른 인성을 기른다.

(2) 활동내용

시기	주제	교육내용	자료
4월	나무 타령	• 나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가락과 장단(자진모리)을 즐기기	음악, 가사판
5월	여우야 여우야	• 노래말에 맞는 동작을 생각해보고 놀이방법에 맞춰 같이 놀이하기	음악
6월	두껍아 두껍아	• 모래 놀이를 하면서 두꺼비 집을 만드는 놀이	음악 모래놀이
9월	동대문 놀이	• 문지기 2명을 뽑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을 통과하는 놀이	음악
10월	잠자리 꽁꽁	• 잠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래말에 맞는 동작을 생각해보기	음악
11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 노래를 부르며 앉아서 다리를 세어보는 놀이	음악

5) 얼쑤! 전래동화

(1) 목적: 전래 동화를 통해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2) 활동내용

시기	주제	교육내용	자료
4월	토끼와 거북이 -기어보고 달려보기	•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놀이	토끼, 거북이 머리띠
5월	복타러 간 총각 -구슬꿰기	• 동화를 통해 끈기에 대해 알고 끈기 있게 구슬을 꿰는 놀이	실, 구슬
6월	견우와 직녀 -오작교 건너기	•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구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놀이	블럭
9월	방귀시합 -풍선 자동차 시합	• 방귀 대신 풍선 안의 공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움직여보는 놀이	풍선, 자동차 모형
10월	흥부와 놀부 -금은보화 목걸이 꿰기	• 흥부 가족이 되어 박에서 나온 금은보화를 끈으로 꿰어 목걸이로 만들어 보는 놀이	링 모양 백업, 끈
11월	소가 된 게으름뱅이 -그림일기	• 동화를 통해 반성에 대해 알고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림일기 써보기	종이, 색연필

라 기대효과

1) 내실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인성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2)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유아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
4)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의식을 갖는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1 2022학년도 인성교육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2안 2022학년도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자녀의 육아 문제 해결 및 안전한 돌봄 운영 요구 증대

나.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알맞은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 필요성 공감

2. 근거

가.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나.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다. 2022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 1.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라.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3. 주요내용

가. 방과후과정 운영

구분	내용
운영방침	1)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운영기준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2)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참여 유아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3) 오전은 교육과정 담임교사, 오후는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배정한다. 4) 합리적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과정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5) 방과후 과정 보육료 및 운영형태 및 제반사항은 유치원과 지역여견, 수요자의 요구에 따르며 방과후 과정 소위원회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운형 유형	❑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7학급(만3세 2학급, 만4세 2학급, 만5세 3학급)
운영 기간	❑ 유치원 학사일정에 따름
운영 학급	❑ 만3세: 새싹1반, 새싹2반 ❑ 만4세: 잎새1반, 잎새2반 ❑ 만5세: 열매1반, 열매2반, 열매3반
운영 시간	❑ 교육과정 운영 시간 포함 1일 11시간(8:00~19:00) ❑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시간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하며, 개별 보호자의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과정 참여 시간 조정 가능

하원시간	❑ 방과후 과정 귀가 희망시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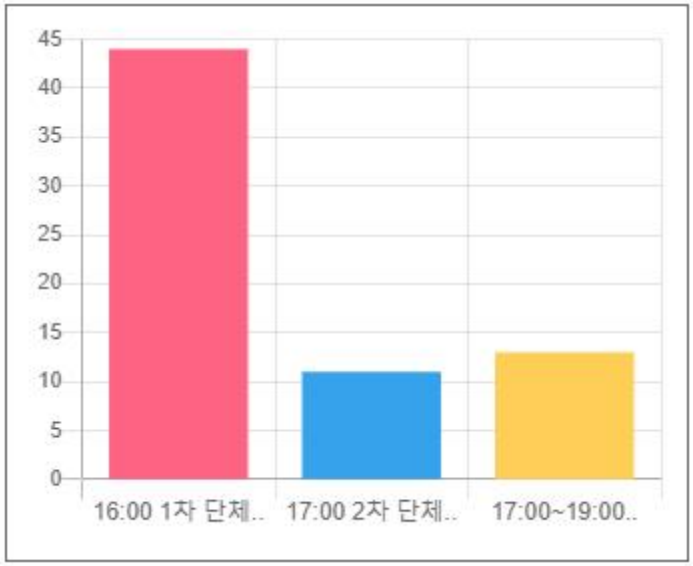 ▶ 단체귀가 - 16:00: 64.7%(44명)/ 17:00: 16.2%(11명) 개별귀가 - 17:00~19:00: 19.1%(13명) ▶ 설문결과에 따라 보호자에 동의하에 16:00 단체귀가, 17:00 단체 귀가 17:00~19:00 개별 귀가하고자 함
방과후 과정 운영비, 수익자부담금	1) 방과후과정 지원금(1인당 월 50,000원): 교재교구, 활동재료비, 방과후 운영비(긴급돌봄 운영비포함) 2) 수익자부담금: 간식비 * 코로나 상황에 의한 긴급돌봄 운영에 대비하여 긴급돌봄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음
건강 및 보건 계획	1) 건강관리 가) 유아 건강관리 (1) 유아 특이체질, 질병 유무 등 개별 유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2) 충분한 휴식 및 바깥놀이를 실시한다. (3) 매일 출결상황을 파악하고, 결석이나 건강 이상 발견시 원장(감),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한다. 나) 감염병 예방 관리 (1) 유아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빈발 감염병의 예방·관리 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등 (2)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다) 대기오염(황사, 미세먼지, 오존), 폭염 예방 관리 (1)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한다. (2) 실내 공기질 및 위생 관리(환기, 창문닫기, 손씻기 등) (3)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안전관리	1) 코로나19 방역대책 가) 등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교육과정과 연계) 나) 매일 발열체크: 37.5도 이상일 경우, 보호자와 연락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 간식지도 시 유아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도록 지도한다. 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손씻기, 마스크 쓰기 마) 교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바) 유아들이 모두 귀가 후 매일 교실 청소 및 소독을 한다. 2)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시 조기 수습 대책반 구성 가) 안전사고 혹은 비상시 보호자 외 연락 가능한 기타 보호자의 연락처 확보한다. 나) 실외 활동 및 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실시한다. 다) 일과 흐름 중 수시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를 한다. 3) 하원 안전관리 가) 하원 시간 및 방법, 하원 동행자(학부모 혹은 대리 동행인)에 대한 귀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재한 내용에 따라 하원 지도한다. 나) 하원 시 학부모 혹은 대리 동행인이 하원기록부에 시간 및 유아와의 관계를 작성한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2안 2022학년도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3안 2022학년도 방과후과정 수익자부담금 징수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2022학년도 방과후과정에서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기간

구분	기간
간식	2022. 3. 1 ~ 2023. 2. 28.

* 간식 일수는 학사 일정, 유치원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나. 내용

공고	간식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입찰방식	가격 규격 분리 2단계 동시 입찰
	방과후 소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최저가 업체 낙찰방식

다. 방과후 소위원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2. 2. 10 (목) 14:00. 2층 협의실
선정결과	돌봄푸드 업체 선정

라. 금액(수익자부담금)

구분	단가
간식	1,300원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3안 2022학년도 방과후과정 수익자부담금 징수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4안 2022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바, 유아들의 올바른 위생관리 기준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한 영양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2학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받고자 합니다.

2. 근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 제4조

3. 주요내용

가. 2021학년도 유치원급식 운영 이행보고

나. 2022 학년도 유치원 급식 운영계획

1) 목적
2) 운영방침
3) 운영개요
4) 급식비 면제자 선정
5) 운영계획
6) 급식물품 조달방법
7)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8) 우유급식계획
9) 학부모 모니터링 계획
10) 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규정]
11) 기타사항

산 현 유 치 원 급 식 운 영 계 획 서

1 2021학년도 유치원급식 운영 이행보고

가. 급식실시

급식대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비	비 고
본교 학생 및 교직원	260명	182일	- 학생: 3,560원 - 교직원: 4,200원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유아학비 400원 지원받음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유급식 미실시

나. 영양관리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분	
본교기준 (평균필요량)	428.04	8.21	75.7	0.13	0.18	11.71	146.9	1.75	영양기준량 준 수
실제공급량	432.77	21.02	88.19	0.23	0.25	10.68	147.81	2.5	

- 6.9.12월의 한주씩 표본하여 실제 영양량의 평균을 산출
- 전체적인 영양소의 평균필요량 이상 제공.
  · 튀김류는 평균 주 2회 이하로 제공하여 열량이 높지 않게 식단을 작성 및 실시.
  · 완제품보다는 주로 조리실에서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식단들로 구성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함.
  · 비타민C군이 채워지도록 노력하고자 함.

다. 업체계약현황 (2021.03~2021.12)

구분	3월	4월	5월	6월	7-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농산,김치	스쿨푸드									수의계약
공산	스쿨푸드						현우유통	스쿨푸드	현우유통	비교견적 수의계약
축산	광주축협	한라식품								수의계약
수산	태진수산			해정수산			수협			시흥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동구매
쌀	안산농협									시흥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동구매
친환경	해당없음							스쿨푸드		수의계약

라. 업무 추진실적

구분	추진내용	실적	내용
급식 평가	급식위생점검	상반기: 21.07.20. 하반기: 21.11.15	- 평가기관: 상반기 자체점검 / 하반기 시흥교육지원청 - 점검결과: 상반기 A /하반기 A
	급식운영평가	하반기: 21.11.15	- 평가기관: 시흥교육지원청 - 점검결과: A
급식 정보 안내	급식안내 및 영양정보 안내	월 메뉴 안내: 9회 주간열량 및 원산지표시	- 홈페이지에 게시 - 홈페이지 및 식당게시판 게시
	급식만족도조사	2021.10.01	- 급식만족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이 **95% 나타남**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상반기: 21.10.13. 하반기: 22.02.08.	- 홈페이지에 게시
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활동	-	-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 외부인 방문자제
	급식소위원회 활동	21. 10. 21.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 실시
식생활 지도	잔반줄이기	주 1회 <수다날> 잔반없는 날 실시	- 기호도 높은 식단을 구성, 잔반을 줄이고자 노력
	식생활지도	급식시간을 통해 지도	- 칸막이 사용,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질서지키기, 식사위생, 바른식습관 지도

2 목적

- 다양한 종류의 음식 제공과 섭취기회 마련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 원아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

3 운영방침

-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된 영양식 공급
- 급식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급식 질 향상
- 급식식재료 구매와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 내실화
- 편식교정, 올바른 식습관 지도 등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4 운영개요

1. 급식 계획

급식대상	만3세 (5개반)	만4세 (5개반)	만5세 (5개반)	교직원 (기타포함)	합 계
급식인원 (변동가능)	69	84	135	31	319
급식일수	주 5회, 연간 183일				
급식시간	11:10 ~ 13:25 (코로나 19상황 및 교육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급식관련직원	영양교사1명 조리사1명 조리실무사3명				
급 식 비	원 아 : 3,150원=3,150원(무상급식비) 교직원 : 4,200원(수익자부담)				

※교육 일정 및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연간급식일수

월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일수	21	21	21	20	15	4	20	19	22	20	183
비고	▶ 법정 공휴일, 졸업식 당일을 제외한 급식 일수(총 185일 내 지원가능) ▶ 학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연간 급식일정과 일수가 변경 될 수 있음.										

3. 2022학년도 급식비 구성

2022학년도 급식비	**학생**	**3,150원**	식 품 비	**2,570원(90%) + 300원(유아학비)**	*2022학년도부터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 분리하여 단가 적용 *유아학비 6,000원 지원
			운 영 비	**280원 (10%)**	
	교직원	**4,200원**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 급식비보다 같거나 높아야함		

※교직원 급식비 산정 시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었다고 하여, 기존에 교직원들이 부담했던 인건비 부담분까지 교직원 식비에서 제외시키라는 의미 아님.

따라서 각급 학교별 자체 사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의 교직원 급식비와 **2022년 조리실무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단가 상승분(전년대비 5.1% 상승)을 참고하여 적정수준의 교직원 급식비 책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를 권장함.(학교급식협력과-677(2022.1.21.))

-교직원부담 급식비는 무상급식비 + 자치단체지원금(친환경지원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식품비, 운영비(연료비, 인건비, 관리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학생급식비보다 적게 책정 금지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 급식실 근무 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2항 9호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후 급식비 면제 여부 결정 가능[근거 : 학교급식기본방향]

※매 분기별 상황에 따라 급식비가 변동될 수 있으며, **교직원 급식비도 학생급식비 결정 금액과 동일**하게 결정되어 변동될 수 있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잔액 발생 또는 부족 시 세목 간에 이관하여 사용한다.
(단, 식품비는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5 급식비 면제자 선정

-급식종사자(조리사, 조리실무사)
: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급식실 근무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2항 9호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후 급식비 면제 여부 결정 가능

6 운영계획

1. 영양관리
가. 유아기에 필요한 영양기준량 적용

구분	연령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 A (RE)		티아민 (비타민B1)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유아	3-5세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42	170	1.5	2.0
본원기준량		**425.69**	**8.09**	**74.6**	**98.41**	**0.13**	**0.17**	**0.18**	**0.2**	**11.45**	**14.79**	**146.47**	**176.6**	**1.69**	**2.2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20)]

-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 각각 55~65% : 7~20% : 15~30%임

나. 곡류 및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콩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제공

다.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사용을 제한하고 우리 농산물의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

라. 유아 기호도, 급식시설 및 예산 등 감안한 식단 운영

마. 급식 관리: 하루 필요 열량에서 간식을 제외한 1/3 수준으로 제공하며 열량을 계산할 때에는 주재료 뿐 아니라 부재료 및 양념의 양도 함께 계산

2. 위생관리

가.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은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

나.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연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 중단되어 한시적으로 연 1회 실시 허용)

다. 식재료는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검수하고 기록

라.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용도별(채소류, 육류, 어패류)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소독

마. 식품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이상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오염방지

바.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배식기구·용기 등은 시간, 장소를 구분·관리하여 재오염방지

사. 조리 완료 식품은 적정온도로 빠른 시간내에 제공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비치

3. 청소계획

가. 담당 업무 및 청소구역

- 주방업무 : 물품검수, 식재료 전처리, 점심준비, 설거지, 주방 및 식당청소, 식자재 창고정리, 냉장고 정리, 문단속, 가스점검
- 청소업무 : 주방, 식당, 식품보관실 및 소모품 창고, 세탁업무(1일 2회)

나. 연간 청소계획

시기	청 소 구 역
일별	* 식기 및 조리도구 세척 및 소독 * 바닥 및 배수로 청소 : 세제 및 락스 이용하여 세척 * 식품 보관실 정리정돈 * 쓰레기 및 잔반 구역 정리 * 업무 후 전체 알코올 소독 * 행주 및 수저 열탕 소독 * 학생 식당 청소 및 소독
주별	조리실 입구 바닥 청소, 배기 후드 및 닥트, 냉장고 대청소 조명, 환기 기구 청소, 소모품 창고 정리 배수로 덮개 및 트렌치
월별	식판 및 기기 스케일 제거(약품 사용), 열탕 소독
	정기소독
연간	학기별 급식기기 점검(2월, 8월)

4. 위생 및 안전교육

가. 식품 취급하는 사람의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급식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나. 식중독, 전염병, 세균, 기생충 등의 생태에 관한 기초지식 및 주의사항 교육

다. 가스, 전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켜 사고 예방

라.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5. 유아 식생활 지도 교육

가.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식량의 적정배분 소비에 대한 이해 증진

나. 균형된 영양공급으로 유아기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 도모

다. 식품별, 음식물별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한 편식 교정 및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

라. 급식을 위해 애쓴 많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7 급식물품 조달방법

1. 2022학년도 급식물품 조달방법

품목	계약기간	계약방법	비고
농산물, 김치류 (잡곡포함)	1개월	수의계약(농산물), 식약청 HACCP 인증업체 중 수의계약(김치류)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 방학기간에는 2개월 계약 가능함.
가공식품	1개월	수의계약	
축산물	1개월	수의계약	
수산물	1개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구매 수의계약	
쌀	1년	시흥시 공급 햇토미 (10kg포당 일부 지원받음)	
우유	1년	수의계약	

2. 공급업체 선정기준

구분	기준	비고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 공급업체는 체계적인 위생관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구비하고 이 를 준수하는 업체 . 위치한 장소 및 창고 등 보유시설, 설비의 위생상태가 청결하며, 관 리 상태가 양호한 업체	
업체의 운영능력	. 유치원급식에서 요구하는 식재료 규격에 부합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 반품처리 및 각종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업체 . 표준화되어 있고 관련문서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 .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 식재료의 포장상태가 완벽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운송위생	. 배송직원의 식품취급방법이 위생적인 업체 .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식품운반기준에 적합하게 식재료를 운반하고 냉장,냉동식품의 온도는 기준범위 이내로 납품하는 업체	

6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1.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가. 아래 식품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위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산현유치원 식재료 검수기준 적용**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적용하여 **국내산 상품을 원칙으로 함**
- 단가 등의 문제로 부득이 국내산 식품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선정

* 농산물 : 건목이버섯, 아몬드 및 과일류(키위,바나나,파인애플 등)

* 수산물 : 동태포 등 일부 품목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 등

(러시아산: 동태, 코다리, 임연수, 가자미, 명엽채 /중국산: 낙지 /베트남산: 주꾸미, 낙지)

* 공산품 : 가공포장 제품 및 완제품(옥수수,완두콩,토마토케첩 등)의 구입 시

나. 기타 식품은 학교급식법령에 부합되는 제품을 사용

산현유치원 식재료 선정 기준

구 분	식재료 규격	비 고
농산물	o 국내산 우수농산물(명시품목) 및 상품 기준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입찰시 규격) o 원산지 표시 제품 o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넣는 위해물질(방부제,첨가물)배제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쌀	o 일반쌀 사용 - 수확 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 사용 - 도정연월일 1달 이내 제품 사용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가공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입찰시 규격) o 유통기한 표시된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축산물	o 육류 : 쇠고기 - 한우 1등급, 냉장(일부 품목 제외)	도축검사증명서 및

	돼지고기 - 국내산 1등급, 냉장(일부 품목 제외) 닭고기 - 국내산, 냉장, 1등급 제품 달걀 - 등급란, 1등급제품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수산물	o 국내산 상품(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뼈, 내장제거 후 작업 * 냉장온도(5℃이하)준수 -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패류 * **내용물에 물, 얼음이 들어 있지 않을 것**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 (5℃이하)준수 -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입찰시 규격) o 원산지를 수산물을 생산하는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 (다만,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원양 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김치류	o 국내산 식재료 사용(식품포장에 표기, 부재료 포함) o HACCP적용업체 제품 사용, 위생적 포장 처리 o 자가품질검사서, 시험성적서 적합제품 o 숙성(PH-,염도)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떡 류	o 국내산 식재료 사용(식품포장에 표기) o HACCP적용업체 제품 사용, 위생적 포장 처리 o 자가품질검사서, 시험성적서 적합제품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7 급식종사자 파업 시 급식조달 방법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위행위(파업)가 확정시
   가. 기존 식단 발주 취소
   나. 유아 및 교직원 간편식(빵 또는 떡, 과일, 요구르트, 호상요구르트, 우유 등)으로 식단 변경하여 발주, 발주 불가 시 개인 도시락 지참
   다. 학부모 안내장(식단변경 및 파업관련 내용) 및 문자발송
2. 조리종사원의 파업참여율에 따른 대책방안

번호	파업참여율(%)	대 책 방 안
1	50% 파업에 참여할 경우(2명)	① 일부 음식 유치원제공 및 유아도시락 지참 - 밥,국,김치는 유치원에서 제공, 반찬은 유아도시락 지참 ② 급식대용품(빵, 떡, 음료, 과일, 요구르트, 우유 등) 제공
2	100% 파업에 참여할 경우(3명)	급식대용품(빵, 떡, 음료, 과일, 요구르트, 우유 등) 제공 - 제공 불가 시 개인 도시락 지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대체인력풀, 학부모 동원 안됨**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도급에 의한 운반급식 및 외부 도시락 반입 안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위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8 우유급식계획

1. 기본방침
가. 유치원 우유급식을 통하여 식생활개선과 체력증진
나.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다. 저소득층 유아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코로나19바이러스 종식 전까지 유아의 건강을 위해 우유급식 실시하지 않으며, 종식 후 우유급식 실시**
2. 우유급식 대상
희망급식 : 우유 급식을 희망하는 유아(**전액 수익자부담**)
3. 우유급식단가 및 품목
가. 단가 : 입찰단가
나. 공급품목 : 백색우유 200ml, 강화우유 제공가능(저지방 및 기능성 우유)
본 유치원 상황 및 업체현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위생관리
가. 검수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통기한, 포장상태, 관능검사 등을 실시한 후 반드시 이상유무를(검식) 확인 후 배식토록 한다.
나. 우유공급차량은 냉장차를 이용하여 공급
다. 매일 급식한 우유는 냉동고에 보존식으로 18℃이하에서, 144시간(6일)동안 보관
라. 공급된 우유는 당일 급식토록 하며 방과 후에 집에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학부모 모니터링 계획

1. 목적과 배경
학부모의 검수 및 검식, 배식참여를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유치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운영 방법
가. 학기 초 구성하여 년 2회 이상 활동 (*세부일정은 추후 알림)
나. 검수 시간(7:40~8:40)운영함. 검식 시간(점심시간)
다. 활동 시 영양교사, 조리사와 함께 활동
라. 운영결과 개인별로 의견을 제출하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급식운영에 반영,

개선하도록 함.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급식실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어 교육청 안내가 있기 전 까지 모니터링 중지

3. 모니터 활동 내용

가. 검수 및 개인위생, 시설설비위생, 식재료 위생 점검

나. 검식 및 배식참여

다. 기타 급식운영 관련 협의 및 모니터링지 작성

4. 유의사항

가. 복장은 되도록 단정하게 하고 긴 머리는 묶는다.

나. 손톱은 길지 않게 정리하고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다. 위생모, 위생화, 위생가운,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한다.

라. 신발은 신발소독을 하고 조리실로 들어온다.

마. 손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손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10 급식소위원회 구성 ·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항"에 의거 산현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유치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위생, 검식 등에 관한 모니터링

② 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방문

③ 유치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④ 기타 유치원급식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 조직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원위원1명, 나머지위원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인원은 5~7명 이내로 한다.

◦ 자격

-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학부모 또는 지역위원), 학부모 중에서 학교급식에 전문성 및 관심이 많은 자로서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하여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학교급식 납품업자 및 이해관계자 제외)
- 간사는 유치원 영양(교)사가 되며, 간사는 학교급식품 납품업체 선정 등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05.1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 불가능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등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불가피한 경우: 연임이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나 기타 특수한 여건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활동) - 연2회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기타사항

1. 2022학년도 우유급식비 및 수익자(교직원)급식비 징수 및 환불 규정(안)

제 1 조 (목적)
- 다수의 유아 우유급식비를 징수함에 있어 전입.전출과 장기결석생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를 제정하여 징수 및 환불을 용이하게 함에 있다.

제 2 조 (대상)
- 산현유치원에서 우유급식을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전입유아의 우유급식비 징수)
- 전입 유아의 우유급식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매월 초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우유급식 실시/종료 확인서

제 4 조 (전출 유아의 우유급식비 환불)
- 전출 유아의 우유급식비는 전출일까지의 급식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단, 전출 일주일 전 사전 통보에 한하며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반환한다.
  ▸구비서류 : 우유급식 실시/종료 확인서

제 5 조 (장기결석 유아의 우유급식비 반환)
- 우유급식은 학기단위로만 주문·취소 가능하며, 단 부득이한 사정(입원 등)으로 장기결석(5일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통보에 의해 환불 가능함(개인사정, 단순 변심 등은 해당 안 됨).
- 담임교사가 유아의 전출을 통보하지 않아 발주가 계속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담임교사가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불 한다.
  ▸구비서류 : 우유급식 실시/종료 확인서

제 6 조 (교직원 연수 출장 시 급식비 및 우유급식비 반환)
- 교직원 장기출장(5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따른 사전 출장신고서 제출 시 감액하고 급식비 및 우유값을 환불 조치한다. 그 외는 내부 협의로 한다.
  ▸구비서류 : 우유급식 실시/종료 확인서

제 7 조 (우유급식 중단 아동)
-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급식을 중지해야 할 경우 우유급식비를 환불 조치하고 급식 대상유아에서 제외 시 킨다. 건강상의 문제 또는 알레르기로 인하여 부득이 급식을 중지해야 할 경우를 말하며 학부모에게 확인하여 급식 대상아동에서 제외시킨다.
  ▸구비서류 : 우유급식 실시/종료 확인서

제 8 조 (국가 전염병 발생 시 급식비 반환)
- 국가전염병 발생 시 유치원 사정으로 인한 휴원의 경우 날짜에 상관없이 환불한다.

(시행일) 본 내규는 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단수, 단전, 조리실무사 파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치원에서 자체 조리된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가. 급식여부는 유치원장이 결정함.

나. 대체식품은 식품단가에 준함.

다. 인스턴트류 및 가공된 빵 및 떡류, 기타 점심대체 식음료품(과일쥬스, 유제품, 과일 등)

3. 감염병 대응 학교급식 운영계획

구분	운영계획
학교급식 위생관리	- 급식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위생교육 실시 - 급식실, 조리기기, 식품접촉용기, 식기류 세척 및 소독관리 철저 - 급식 시설 방역소독 주기적 실시 - 급식 회차별 10분간 방역관리시간 환기 및 소독실시(10분간 급식중단, 수시환기) - 외부인 및 납품업체 배송직원 출입통제 관리(1층현관 도어락 등 시설설치 완료) - **감염병상황 종료시까지, 학부모 모니터링 및 학부모 검수 운영중단**
식당배식 관리	- 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담임교사) - 학생 급식지도 관련내용 상세 안내 및 안내문 배부(업무메시지 이용)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급수대 사용중지 안내
급식운영 방안	- 감염병 대응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관련지침 준수 (식재료 구매방법, 검수기준, 식재료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경비지원기준 등의 변경기준 및 지침 적용) - 조리인력 감염으로 급식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식 제공 또는 공급가능한외부운반 급식업체가 있는 경우 외부도시락 활용하여 급식제공
확진자 발생(학교 휴업시)	- 급식시설 폐쇄 및 급식시설 방역실시(보건당국 조치에 따름) - 식재료 발주 중단: 식재료 계약 변경 등 행정 업무 처리 - 교육공무직 근무 상황 조정 - 저소득층 학생 학기 중 중식지원 방안 마련(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학교급식대책회의 실시 : 학교급식 개시 관련

가. 감염병(코로나19)으로 등교수업 및 학사일정 변동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식재료 폐기될 경우 식재료 관리 방안

1) 등교중지에 따른 식재료 처리방안 납품업체와 협의

2) 업체 반품 불가시 : 저장 및 보관성을 고려한 사용가능 여부 판단 후, 향후 사용불가 식재료 폐기처분 결정(내부결재 후 처리)

3) 식재료 폐기로 인한 대금 지급 방법 : 무상급식의 경우 가급적 반품 및 발주 취소로 결정하되, 납품업체와 계약서에 따라 협의하여 발주취소가 불가한 경우 급식일수로 인정하고, 무상급식비에서 지급

나. 급식종사자 자가 격리 및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 대비

구분	대응방안
영양교사 격리 시	- (업무가 가능한 경우) 자택 또는 격리 시설에서 원격으로 긴급업무수행 -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자 지정
조리종사자 격리 시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3명)	- 조리종사자 대체고용 근무가 원칙 - (대체자 구할 수 없는 경우) ① (격리자 1명) 기존 작업자들이 업무를 나누어 급식을 실시 ② (격리자 2명~3명) 메뉴를 조정하여 간편메뉴 제공 및 대체급식 또한 불가할 경우 미급식 - 조리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확진되었을 경우는 동일공간 내 다수가 밀접접촉(조리공간 내 접촉, 샤워시설 이용 등)하는 근무여건으로 조리종사자들이 자가격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급식 또는 대체급식(완제품)으로 진행
식재료 공급차질 발생 시	① 메뉴조정이 가능 할 경우 메뉴조정 ② 대체급식(완제품)이 가능할 경우 대체급식 ③ (①②가 불가능한 경우)미급식

다. 급식 운영 방법

1) 학급별 지정좌석제 운영

- 학년 별 시차배식 실시하여 학년 순서대로 입장하여 반별로 좌석을 나누어 식사하도록 함
- 좌석배치도를 학기 초 학년부에 미리 공유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입장하도록 함
- 학년 별 배식 중간 10분 간 소독 및 환기 시간 가지도록 함
- 식사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후 급식실 입장하도록 함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식 업체 선정 따로 안하나요?
- 대체식은 따로 업체 선정을 하지 않고 긴급 상황에 맞추어 발주가 되는 식재료로 구성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 햇토미 계속 사용 해야 하는가요?
- 시흥 지역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유치원에서 결정하여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 더 이상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4안 2022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5안 2021학년도 산현유치원 학교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주요내용: 자체수입 증감, 세부사업별 증감, 목적사업비반납 등의 회계말 정리추경 실시

가. 기정 예산액: 1,750,844천원

나. 경정 예산액: 1,799,446천원

다. 비교 증감액: 48,582천원

1) 세입증감내역

▶이전수입: 기본운영비 외 50,948천원

▶자체수입: 방과후간식비 외 -2,366천원

합 계: 48,582천원

2) 세출증감내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연수 외 -2,281천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학교급식운영 외 31,670천원

▶기본적교육활동: [국고]특수교육교과활동 외 11,502천원

▶선택적교육활동: 유치원방과후운영 외 1,232천원

▶교육활동지원: 교무학사운영 외 138천원

▶학교일반운영: 부서기본운영 외 6,321천원

합 계: 48,582원

▣ 자세한 내역은 [유치원홈페이지]-[유치원재정공개]-[예결현황공개]에 탑재

-목적사업비반납 및 사업간 금액 조정에 중점을 두어 2021학년도 회계 마감을 위한 정리추경을 하였으며, 3층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3% 이하로 최소화 하여 2022학년도로 이월할 예산은 5백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5안 2021학년도 산현유치원 학교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6안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교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주요내용: 2022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학교회계의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가. 세입액: 587,353천원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외 547,426천원(93.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외 34,927천원(5.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5,000천원(0.8%)

나. 세출액 : 587,353천원

▶인적자원 운용: 기타수당 외 53,600천원(9.1%)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교급식운영 외 222,139천원(37.8%)

▶기본적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운영 외 83,158원(14.1%)

▶선택적교육활동: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외 13,500원(2.2%)

▶교육활동지원: 교무학사운영 외 75,470천원(12.8%)

▶학교일반운영: 부서기본운영 외 139,486천원(23.7%)

▣ 자세한 내역은 [유치원홈페이지]-[유치원재정공개]-[예결현황공개]에 탑재

- 2022년 1월 1일 기준 일반 16학급, 특수 2학급, 학생수 30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3월에 학생수 변동되면 기본운영비도 변경 예정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6안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교회계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7안 2021학년도 산현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실시 관련(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2022년 2월 21일자로 김민철 위원님(학부모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2. 근거: 산현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2021.03.03.] 제4장 위원의 선출 중 제 12조 (보궐선거)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에서는 현재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였으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현재 인원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요?
- 동의합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7안 산현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8안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사 운영방안 및 대응체계 전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2022학년도 개학 시 코로나19 대응 및 원활한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사 운영방안」 및 따른 대응체계 전환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근거:
   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2553(2022.2.11.)
   나. 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592(2022.2.11.)
3. 학사운영방안
   가.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및 기준
   (지표) ① 유치원내 재원생 신규 확진 비율 3%
   ② 원내 재원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학사 운영 유형		내용	적용 기준
유형1	정상교육활동	전 유아 등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지표① , 지표② 모두 기준 이하
유형2	전체등원 + 교육활동 제한	전 유아 등교, 교육활동 제한	지표① 기준 초과 또는 지표② 기준 초과
유형3	일부 등교 + 일부 원격수업	학년, 학급 단위 원격수업 실시	지표① , 지표② 모두 기준 초과
유형4	전면 원격수업	전 유아들에 대해 원격수업 실시	지표① 기준이 초과이면서, 모든 학년이 지표② 기준 초과
	※ 전면 원격수업 5일(공휴일포함 7일)이내 실시한 후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1~3을 적용		

나. 대응체계 전환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학교 방역	진단 체계	방역당국 조사실시	⇒	▸ 확진자 발생시 유치원별 자체 조사로 밀접 접촉자 검사 및 관리 ▸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 도입 (찾아가는 검체팀 활용)
학사 운영	기준 마련	중앙단위	⇒	유치원 단위
	기준 적용	학교 내 일괄 운영		* 유치원은 매일 등교
	운영	교육부		유치원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비율 3%면 몇명 인가요?
- 9명입니다.
- 더 이상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8안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산현유치원 학사 운영 방안 및 대응체계 전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59안 보결수업에 관한 규정(교육과정 보결수업 및 방과후대체수업)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보결수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아의 안정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안전생활을 도모하고 유아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원들에게 보결수업을 균형 있게 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2. 근거: 유아교육법 제 21조
3. 주요내용: 보결수업에 관한 규정

보결수업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보결수업 및 방과후대체수업)

산현유치원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산현유치원 보결수업에 관한 제반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 침) ① 담임 부재 상황에 대비하여 보결 수업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② 보결 수업 교사는 맡은 시간 동안 학급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다한다.

③ 보결 수업 교사는 보결수업 배정 원칙에 준하여 배정한다.

제3조 (배정원칙) ① 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교사 미 채용 시 보결수업을 배정한다.

② 수업교사 또는 수업교사가 수업하는 담임에게 보결수업을 배정한다. 특수학급 부재 시 통합학급교사 반으로 배치한다.

③ 방과후기간제 시간제 교사 부재 시 연령별 교육과정 교사가 대체수업하며 연령별 반 순서로 대체수업을 배정한다.

③ 2일 이상 부재 시 수업교사를 임시 담임으로 지정한다.

④ 수업교사가 사정이 있을 경우, 원감이 임시 담임을 수행한다.

⑤ 1~4항의 원칙에 따라 보결 수업을 배정하고 보결수업대장에 서명한 후 결재를 필하고 보결수업에 임한다.

제4조 (보결담당자의 의무) ① 보결 수업을 실시한 학급의 마지막 보결수업 교사는 유아 하원지도, 청소지도, 학급 문단속 등 책임을 지며 원감에게 이상 유무를 통보한다.

② 보결 수업 담당교사는 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③ 보결 수업 종료 시에는 해당 학년 반의 이상 유무를 학년부장 또는 교무부장에게 이상 유무를 구두 통보한다.

제5조 (보결수업 처리) ① 보결수업이 예상되는 학급의 담임교사는 사전에 보결수업 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결수업 업무 담당자는 효율적인 보결수업 관리를 위하여 보결수업을 사전에 배정하여 보결 담당자에게 고지한 후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③ 수업교사 부재에 따라 담임교사가 수업을 대신한 경우, 보결수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보결수업 수당) ① 보결수업 수당은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교사별 총 보결한 시간에서 본인의 수업시간 중 결강한 시간(학기당 개인복무 상황 반영)을 제외한 보결 시간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한다.

② 보결수당은 유치원회계에 편성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에 의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보결수업 수당은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지급하며 보결수업 대장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④ 보결수당 일만오천원으로 한다. 학기중 방과후과정 대체수업수당은 생활임금 단가로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전 교원에게 공개한다.
② 본 규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결수업하시면 대체교사를 채용하기도 하나요?
- 본원에 비담임선생님이 3명 계셔서 일주일 이상 보결수업이 필요시에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59안 보결수업에 관한 규정(교육과정 보결수업 및 방과후대체수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60안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등원이 어려운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흥미, 발달에 적합한 원격수업을 제공하고자 함
2. 근거:
   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18(2022.2.7.)
   나.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2553(2022.2.11.)
   다. 2022 산현유치원 교육과정
3. 운영방안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원격
수업
지원
방안</td><td>
<table>
<tr><td>놀이 콘텐츠 공유</td><td>○ 교육부 ‘i-누리’ 포털, 경기도교육청 ‘놀이ON’사이트 등을 활용</td></tr>
<tr><td>교육방송 콘텐츠 안내</td><td>○ EBS 방송(우리집 유치원), 유튜브 클립 영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td></tr>
<tr><td>가정연계 자료 지원</td><td>○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의 연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놀이꾸러미 제공</td></tr>
<tr><td>학부모 및 유아 상담</td><td>○ 유아와의 친밀감 형성 및 안전 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 상담,
학부모 온라인 상담 등</td></tr>
<tr><td>비대면 수업</td><td>○ ZOOM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출석 및 하루놀이 안내</td></tr>
</table>
</td></tr>
<tr><td>가정
안내</td><td>○ 연락망 구축, 줌 접속망 확인 등 가정 소통 체계 점검 및 원격수업 관련 사항
(출결 및 운영 방법 등) 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td></tr>
<tr><td>출결
관리</td><td>
<table>
<tr><td>출석 인정 방법 및 기준</td><td>○ 카카오 채널로 회신</td></tr>
<tr><td>평가·기록</td><td>○출결 확인 자료(놀이 기록)를 누적 관리하여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시 유아 이해자료로 활용</td></tr>
</table>
<table>
<tr><th>출결 확인</th><th></th><th>출결 기록·처리</th><th></th><th>유아 평가</th></tr>
<tr><td>• 채널로 출석 확인</td><td>⇨</td><td>• 출석부 등 보조기록부에 기록
• 출결기록 종합하여 처리</td><td>⇨</td><td>• 놀이 기록 및 지원 내용 누적 관리
• 추후 생활기록부 기재</td></tr>
</table>
</td></tr>
</table>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방안

산현유치원

1 목적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방안 마련

2 운영방침

○ 감염병 상황에 따른 전학년, 학년별, 학급별 원격수업 전환 시 적용한다.
○ 개인단위의 등원중지 유아(자가격리자 등)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이 긴급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

3 추진계획

운영기간	○감염병 상황에 따른 전학년, 학년별, 학급별 원격수업 전환 시
지원방법	○담임교사 : 놀이지원, 정보통신매체, 실물자료 중심의 놀이꾸러미 등 제공 ○학 부 모 : 하루놀이 상황 제출 (유아의 놀이(활동)장면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공유)
평가방법	○유아의 놀이장면 기록 등을 통해 유아의 발달상황 파악에 활용
환류	○유아의 발달수준 및 흥미와 관심 등을 반영하여 다음 활동 계획
운영방법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따른 놀이자료(콘텐츠) 안내 ○온라인채널, e알리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정 내 유아 놀이 지원
교육자료 지원방안	○교육플랫폼인 교육부 'i-누리' 포털, 경기도교육청 '놀이ON' 사이트 등 놀이콘텐츠 공유 ○EBS방송, 유튜브 클립 영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방송 콘텐츠 안내 ○온라인 플랫폼(e-알리미)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계획안 탑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의 연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놀이 자료 꾸러미 제공 ○유아 놀이의 교육적 의미 및 놀이에서의 학부모 역할 등 부모교육 자료 안내
활동내용	○놀이주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놀이 및 활동, 7대 안전교육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 인성교육, 기본생활습관교육, EBS 교육방송프로그램 등
활동시간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활동 1개당 15~20분 확보(일일 3~4개 제시)
유의사항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함께 고려하여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활동 제공
원격수업 방안	○**출석체크 확인 방법(학부모)** **- 주1회 이상 줌을 활용한 출석체크 및 하루놀이(놀이, 연계활동, 교육방송, 안전교육) 안내**

	- 하루놀이는 사전 교사 시연 후 가정 안내 - 학부모는 하루놀이 상황을 **채널**을 통해 담임에게 전달(글, 사진, 동영상 등) (예: 상자쌓기 놀이를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안전교육을 통해 코로나예방수칙을 잘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상자놀이와 연계활동을 즐거워했어요.) - 단, 줌을 활용한 출석체크가 어려운 경우, 채널을 통해 놀이여부를 담임에게 전달 ※ 매일 출결확인이 원칙이나 매일 출결확인이 어려운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와 활동 확인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 ○질병 등으로 인해 당일 원격수업 또는 하루놀이 상황 전달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원격수업방법 및 전달사항 협의 ○등원중지대상자(확진자, 의심환자,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로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원 후 입원치료(격리)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 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 등원일수 기준으로 1~2일 무단결석 시 **유선으로 확인**하며, 3~5일 무단 결석 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근거하여 처리함 ○**출석을 확인**하여 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으로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계획(1주차)

산현유치원 즐거운반 원격놀이계획

놀이주제	비닐로 놀아요	놀이기간	2022.0.00.(월) ~ 0.00.(금)
목표	• 비닐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안다. • 비닐을 탐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놀이한다. • 재활용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다.		
놀이 의도	•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즐겁게 놀 수 있는 소재이며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놀이재료입니다. • 한 번만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재활용하여 즐겁게 놀이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정놀이 유의점	• 제시된 놀이를 곧바로 아이와 실행하기보다는 아이와 비닐을 탐색하며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각을 수용해주고, 이를 통해 창의성이 증진되도록 지원해주세요. • 비닐을 머리에 쓸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분		0월 00일(월)	0월 00일(화)	0월 00일(수)	0월 00일(목)	0월 00일(금)
교육방송		EBS1TV 매일 아침 TV로 만나는 '우리집 유치원' (본방) 오전 9:40~10:30 (재방) 오후 3:10~4:00 https://home.ebs.co.kr/livehome/main				
놀이	놀이 예시	[비닐 제기 놀이] 비닐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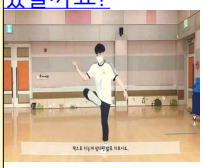	[비닐을 하늘로 날려볼까?] 비닐을 하늘에 띄워보아요 	[비닐 공 놀이] 비닐로 공놀이를 해보아요 	[비닐을 멀리 멀리!] 비닐을 멀리 멀리 날려보아요 	[얼음 위에서 놀이한다면?] 비닐로 스케이트를 타보아요
	가정놀이자료	 비닐봉투	 비닐봉투	 비닐봉투	 비닐봉투	 비닐봉투
활동	연계활동	[동요] 위험한 비닐봉지	[동화] 집에서 놀기 송	[동요] 공 놀이	[동화] 외출할 땐 꼭 마스크를 써요	[동화] 미끌미끌 빙판길
		https://jr.naver.com/s/babybus_song/view?contentsNo=161599	https://jr.naver.com/s/love_song/view?sort=&contentsNo=162980	https://jr.naver.com/s/textbook_song/view?contentsNo=98642	https://jr.naver.com/s/genikids_song/view?sort=&contentsNo=161837	https://www.youtube.com/watch?v=31XioU_OtaM
일상생활	안전교육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안전 동화)	[5분 나침반 안전교육 자료] 폭염 안전 (자료:6월 3재난)		길을 잃었을 때 (안전 동화)	
원격수업 방법안내		• **원격수업 방법** : 놀이동영상을 활용한 가정 놀이 -0월 00일(월)~00일(금)에는 가정 내 재활용 상자등을 활용하여 놀이해 주세요. • **출석체크 및 하루놀이 안내** : **줌(Zoom) 활용** -요일별 줌 접속일은 추후 채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줌을 활용한 출석체크가 어려운 경우, **채널**을 통해 놀이여부를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 **하루놀이 상황 유치원 전달 방법** : **카카오 채널**로 전달(4시까지)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모습(사진 또는 간단한 글)을 채널로 보내주세요. • 줌 사용방법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계획(2주차)

산현유치원 즐거운반 원격놀이계획

놀이주제	색종이로 놀아요	놀이기간	2022.0.00.(월) ~ 0.00.(금)
목표	• 오감각을 활용하여 색종이를 탐색하고 몰입하여 놀이한다. • 색종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놀이하며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놀이 의도	• 색종이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놀이 활동 재료로 친숙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여 유아들이 주도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입니다. • 유아가 스스로 몰입하여 놀 수 있도록 제공하고, 흥미로운 재료를 추가하여 다양한 놀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놀이 유의점	• 제시된 놀이를 그대로 따라 하거나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유아가 색종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하며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세요. • 제시된 놀이는 요일순서를 바꾸어서 놀아도 되고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놀이를 새롭게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여 놀이할 수 있어요.		

구분		0월 00일(월)	0월 00일(화)	0월 00일(수)	0월 00일(목)	0월 00일(금)
교육방송		EBS1TV 매일 아침 TV로 만나는 '우리집 유치원' (본방) 오전 9:40~10:30 (재방) 오후 3:10~4:00 https://home.ebs.co.kr/livehome/main				
놀이	놀이예시	[색종이 탐색놀이] 색종이를 구기고 찢고 던지고! 신나는 색종이 놀이 	[색종이 공놀이] 구긴 색종이로 공을 만들어 놀아요! 	[색종이 나무 꾸미기] 구긴 색종이로 나만의 나무를 꾸며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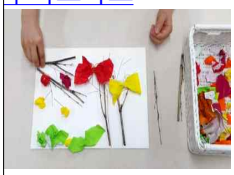	[색종이 모양놀이] 색종이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색종이 색깔놀이] 알록달록 색종이로 색깔놀이를 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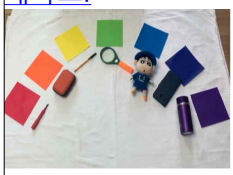
	가정놀이자료	색종이 	[추가] 테이프 	[추가] 끈,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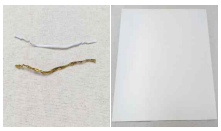	[추가] 가위 	[추가] 풀
활동	연계활동	[동화] 색종이 동화 '너는 참 특별하단다'	[과학] 색종이와 풍선	[신체] 색종이 펭귄과 함께 펭귄 댄스!	[미술] 색종이 폭죽 만들기	[동요] 종이접기
		https://www.youtube.com/watch?v=jeFT7RCHGDA	동영상 첨부	https://www.youtube.com/watch?v=_9iwF8o1pA0	동영상 첨부	https://jr.naver.com/s/play_song/view?contentsNo=143724
일상생활	안전교육	[5분 나침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 함께해요. (자료:3월 4보건)	[5분 나침반]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지켜요. (자료:3월 3재난)		[5분 나침반] 길에서는 안전하게 다녀요. (자료:4월 2교통)	
원격수업 방법안내		• **원격수업 방법** : 놀이동영상을 활용한 가정 놀이 -0월 00일(월)~00일(금)에는 가정 내 재활용 상자등을 활용하여 놀이해 주세요. • **출석체크 및 하루놀이 안내** : **줌(Zoom) 활용** -요일별 줌 접속일은 추후 채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줌을 활용한 출석체크가 어려운 경우, **채널**을 통해 놀이여부를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 **하루놀이 상황 유치원 전달 방법** : **카카오 채널**로 전달(4시까지)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모습(사진 또는 간단한 글)을 채널로 보내주세요. • 줌 사용방법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60안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기타 안내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1학년도 제7회 산현유치원운영위원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출석위원 (6명)
출석교직원(6명)